

남양주왕숙 A-20BL 공동주택 건축설계공모지침서

2021. 08.



I 공모운영지침

1.1 공모 명칭	01
1.2 공모 개요	01
1.3 공모 방식	01
1.4 설계 용역비	01
1.5 과업 범위 및 기간	01
1.6 참가 자격	02
1.7 공모 일정	03
1.8 응모 등록	03
1.9 공모설명회 (지구별 필요시)	04
1.10 질의 접수 및 회신	04
1.11 제공 자료	04
1.12 작품 제출	04
1.13 익명성 및 비리·부정행위 제재기준	04
1.14 공모 담당자	05
1.15 설계심사위원회	05
1.16 설계심사	06
1.17 당선작 선정	07
1.18 당선작 발표	07
1.19 저작권 및 출판·전시	08
1.20 작품 반환	08

II 설계지침

2.1 지구별 설계방향	10
2.2 사업지구 현황	14
2.3 목표 공사금액	16
2.4 계획지표	16
2.5 부문별 지침	18

III 평가지침

3.1 설계평가기준	33
3.2 설계평가 세부기준	34
3.3 감점기준	35

IV 제출도서 및 작성기준

4.1 제출물 종류	37
4.2 제출물 작성요령	37
4.3 제출물 목록	43

V 설계계약

5.1 계약관련 일반사항	45
5.2 과업범위	46
5.3 용역기간	47
5.4 LH 설계공모 당선건수 제한	48
5.5 기타사항	49

VI 불임자료 및 관련서식

6.1. 불임자료	49
6.2. 관련서식	59

I Chapter 공모운영지침

- 1.1 공모 명칭
- 1.2 공모 개요
- 1.3 공모 방식
- 1.4 설계 용역비
- 1.5 과업 범위 및 기간
- 1.6 참가 자격
- 1.7 공모 일정
- 1.8 응모 등록
- 1.9 공모설명회
- 1.10 질의 접수 및 회신
- 1.11 제공 자료
- 1.12 작품 제출
- 1.13 익명성 및 비리·부정행위 제재기준
- 1.14 공모 담당자
- 1.15 설계심사위원회
- 1.16 설계심사
- 1.17 당선작 선정
- 1.18 당선작 발표
- 1.19 저작권 및 출판·전시
- 1.20 작품 반환

I 공모운영지침

1.1 공모 명칭

- 공모 명칭 : 남양주왕숙 A-20BL 공동주택 설계공모

1.2 공모 개요

설 계 담 당 부 서	LH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사업처
위 치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라내곡라내각리 진건읍 신월라진관리사능리 퇴계원을 퇴계원리 일원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대 지 면 적	40,896.00㎡
목 표 공 사 비	214,186백만원 (부가세 포함, 설계가 기준)
설 계 용 역 비	3,939백만원 (부가세 포함)
사 업 기 간	2021. 12. ~ 2026. 06. (55개월)

1.3 공모 방식

가. 공모 방식 : 일반설계공모

나. 관련 법령 및 지침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제2항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조제5호
- LH 건축설계공모 심사 운영지침
- LH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1.4 설계 용역비

가. 설계용역비 : **3,939,373천원** (부가세포함)

블록	계	건.기.토	전기통신	소방(기계)	소방(전기)	조경	공간환경디자인*	추가업무
A-20BL	3,939,373	2,864,577	414,466	224,622	52,867	175,352	140,726	66,763

* 손해배상공제비(전기, 통신) 포함금액

* 공간환경디자인 설계용역비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자가 공간환경디자인 용역 수행시에는 아파트 설계비의 부가세를 제외하고 계약예정[**부가가치세 A20BL(12,756천원)**]

1.5 과업 범위 및 기간 (세부사항은 [5. 계약관련사항] 참조)

가. 과업 범위

- 건축, 토목, 기계, 전기.정보통신, 조경분야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설계
 - ※ 조경은 단계별 준공방식(분담이행) 대상지구
- 각종 사업승인업무 및 각종 심의업무, 설계지원업무
- 각종 인증 및 평가
- 기타 사업 진행 및 설계에 관한 업무 및 발주처 요청 업무

나. 과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52개월(단, 조경공사 착공일까지)

1.6 참가 자격

가. 참가 자격

- 응모자는 대한민국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외국건축사 면허취득자가 참가할 수 있으나, 당선 후 계약 시, 주계약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 등록업체의 국내 건축사로 한정한다.
-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가 전기 및 정보통신 분야와 소방분야의 설계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외에는 전력기술관리법 및 정보통신공사법, 소방시설공사법 등의 관련규정에 의거 해당분야 설계용역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응모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가 공간환경디자인 분야의 설계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외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거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인정하는 환경디자인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의 “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된 공간환경디자인 설계용역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응모하여야 한다.
- 조경분야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등록된 자이면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건설부문 조경 전문분야에 대해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건설부문 조경 전문분야에 대해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여야 한다.
- 용역수행을 위한 전기분야 사업책임기술자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나. 참가 제한

-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자는 3개사 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동일 공모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서는 아니 된다.
- 응모신청시 아래와 같이 공동응모자를 변경하여 참가하는 것을 제한한다.
 - 단독 또는 공동응모 대상지구로 1개 업체가 2개 작품이상 중복 응모하는 경우 (응모마감 후 중복 응모가 확인된 경우 모든 중복 응모는 무효로 처리)
 - 단독으로 응모신청 및 작품제출확약 후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
 - 공동으로 응모신청 및 작품제출확약 후 단독으로 응모하는 경우
- LH 설계공모 심사위원, LH 공공건축심의위원, LH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외부위원 등 공모관계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과 가족은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 공고일 기준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 설계공모 시 불공정 행위로 신고 된(기간 :작품제출 확약서 제출일~작품 접수일) 업체는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명하지 못하거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설계업체는 공모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공정거래법에 의한 기업집단과 관련하여 응모에 참여하는 건축사사무소 전원은 작품접수확약서 제출시 「공정거래 이행 확약서(서식4)」를 의무제출하고, 당선건수 증대시도 등 불공정행위 정보 입수시 발주기관은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는 7일 이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자

료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공모심사에서 제외하며, 2년간 설계공모 참가를 제한한다.

- 우리공사 공동주택 설계공모 및 건축물 설계공모 용역 당선건수 관련 사항은 [5. 계약관련사항]을 참고하여 응모참여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7 공모 일정

공 고	2021. 08. 24. (화)
응 모 등 록	2021. 08. 24. (화) ~ 08. 26. (목) 16:00까지
공 모 설 명 회	없 음
심 사 위 원 기 피 신 청	2021. 08. 24. (화) ~ 08. 26. (목) 16:00까지
질 의 접 수	2021. 08. 25. (수) ~ 08. 27. (금) 15:00까지
질 의 회 신	2021. 08. 30. (월) 예정
작 품 제 출	2021. 09. 23. (목) 16:00까지 (사전예고일로부터 45일 이상 확보)
사 전 검 토	2021. 09. 27. (월) 예정
심 사	2021. 09. 29. (수) 예정
당 선 작 발 표	2021. 09. 29. (수) 예정 (LH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사업수행평가 서류제출	2021. 09. 30. (목) ~ 10. 05. (화) - 전기 및 소방 사업수행평가 대상에 한함
당 선 작 자 료 제 출	2021. 10. 05. (화)
당 선 작 작 품 설 명 회	2021. 10. 07. (목)

※ 공사의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시 이메일 또는 유선통보

1.8 응모 등록

가. 신청방법

- 신청일시 : 2021. 08. 24. (화) ~ **08. 26. (목) 16:00까지**
- 신청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사업처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 전 화 : 055-922-3926(3925) * E-mail주소 : home@lh.or.kr
- 제출서류 : [4.3 제출물 목록 참조]

나. 응모등록을 하지 않은 건축사사무소는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다. E-mail, 방문신청 중 택일하되, E-mail 신청 시 접수완료 여부를 유선 확인하여야 하며, 응모신청 및 작품제출확약 시 응모신청 및 확약서 접수증을 반드시 수령(E-mail 가능)하여야 한다.

라. 연간 당선 2회 이후 추가 당선기회를 사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관련문서, 심사결과, 수상내역 등 증빙서류를 응모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마. 응모신청 및 작품제출확약 후 작품 접수일에 작품을 제출하지 않은 설계공모 참가자는(설계공모 응모신청 및 작품제출확약서에 공동응모자로 기재 후 작품접수에 참여하지 않는 자 포함) 작품접수일로부터 6개월간(공고일 기준) 우리공사에서 공고하는 건축설계용역의 참여를 제한하며, 설계공모응모신청 및 작품제출확약서 제출 후 수주제한 건수 충족으로 작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제한을 하지 않는다.

바. 심사대상이 없거나 1개 뿐인 경우에는 재공고한다.

사. 심사대상이 둘 이상이지만 공모참가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재공고 할 수 있다.

1.9 공모설명회

- 없음

1.10 질의 접수 및 회신

가. 설계공모 참가자는 당해 설계지침서의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기타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설계공모 서면질의서(서식6)」를 참조하여 서면 또는 E-mail로 질의할 수 있다.

나. 접수된 질의에 대한 응답서는 우리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설계용역업무지원시스템 <http://cotis.lh.or.kr>)에 게시한다.

다. E-mail 등에 의한 질의접수가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질의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설계공모 서면질의 회신서에 기재한 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 및 제공도서의 추가 또는 수정으로 간주한다.

1.11 제공 자료

가. 제공 자료는 설계공모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나. 설계공모에 필요한 자료는 우리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설계용역업무지원시스템 (<http://cotis.lh.or.kr>))에 파일로 제공한다.

1.12 작품 제출

가. 제출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1. 09. 23. (목) 16:00까지
- 장 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12층 공공주택사업처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나. 제출물 종류 : [4.3 제출물 목록 참조]

- 제출하는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표기하지 않아야 한다.
- 불가피하게 표기해야 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아래 예와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증 등 공인증명서에 표기된 개인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예 : 주민등록번호는 900101-1*****)

다.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제

- 설계공모 참가자 임직원 이외의 외부전문가가 계획에 참여한 경우 응모작품 제출 시 해당 전문가를 신고해야 한다.
- 미신고된 외부전문가가 심사위원회 선정되어 심사에 참여한 것이 확인된 경우 입상작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계약전 : 입상작 취소
 - 계약후 : 공사가 시행하는 설계용역에 6개월간 참가자격 제한

1.13 익명성 및 비리·부정행위 제재기준

가. 작품에 대한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 금지

-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 대상자 또는 그 측근에게 방문, 전화, 이메일, 휴대폰(문자, 메시지, 그림전송 등), SNS(텔레그램, 카카오톡, 밴드,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등의 게시물 또는 직접 메시지 전송)를 이용하여 작품의 특징이나 제목, 심사번호를 알려주거나 작품내용을 보여주는 등 작품의 익명성과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어떠한 방식의 사전접촉 또는 사전설명 금지한다.
- 작품 심사시 심사위원 개별적으로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받아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이 있었을 경우 「비리·부정행위 등 제재 기준(붙임2)」에 따라 처리한다.
- 설계공모 참가자는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서식2)」 및 「청렴 서약서(서식3)」를 응모 확약 시에, 「사전접촉 금지 확인서(서식14)」를 작품제출 시에 제출해야 하며, 심사위원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통해 사전설명 여부 등을 확인 후에 심사를 진행한다.

나. 사전 접촉 및 사전설명, 비리·부정행위 금지위반 시 제재 기준

-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과의 사전접촉, 제출작품에 대한 사전설명 및 비리·부정행위를 금지한다.
- 사전접촉, 사전설명(제 3자를 통한 사전접촉 포함) 및 비리·부정행위 금지위반이 감사실 등을 통해 확인될 경우에는 「비리·부정행위 등 제재기준(붙임2)」에 따라 참여업체 및 참여업체의 당선을 지원한 공동 부정당업자에게 공모참여제한, 참여업체에게는 감점처리 및 위약금을 부과한다.
- LH에서는 비리·부정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지위반 업체에서 납부한 위약금은 신고포상금으로 사용된다.(「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참조(붙임3)」)

다. 공모지침 위반시 실격처리기준 (신설)

- 공모안이 설계지침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심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
 - 건축규모, 총 예정공사비, 주요 기능별 면적 등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 제출도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 그 밖에 해당 공모안이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실격으로 결정된 경우
 - 「건축설계공모 평가지침」에 따라 등급별 당선 횟수에 도달하여 당선 기회가 없는 경우

1.14 공모 담당자

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사업처 노정현 사원

나. 전화번호 : 055-922-3926(3925) 팩스번호 : 055-922-3949

다. E-mail주소 : home@lh.or.kr

1.15 설계심사위원회

가. 설계심사위원회 구성

- 설계심사위원회 운영기준은 「LH 건축 설계공모 심사 운영지침」에 따른다.
- 설계심사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의 제척 및 기피, 불가피한 불참등을 대비하여 2명 이내의 예비심사위원을 선정한다.

나. 설계심사위원 기피신청

- 설계공모 참가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심사위원 대상자를 응모신청 및 작품제출 확약서 제출 후 7일 이내 심사주관부서에 심사배제 신청할 수 있다.
- 설계심사위원 기피 신청시에는 「심사위원 기피신청서(서식7)」와 관련 증빙서류를 밀봉하여 심사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기피 신청기한내에 신청하지 않은 설계공모 참가자는 추후 심사위원 선정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16 설계심사 (세부사항은「LH 건축 설계공모 심사 운영지침」참조)

가. 심사일시 및 장소

— 심사일시 : 2021. 09. 29(수) 14:00

— 심사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3층 2회의실(변경시 안내예정)

나. 사전검토

- 사전검토위원회에서 관련법규 및 지침에 대한 위반여부를 검토하고 대표건축사의 확인 후 설계심사위원회에 보고한다.
- 대표건축사를 대신하여 사전검토결과를 확인할 경우는 「위임장(서식8)」을 지참하여야 한다.
- 사전검토결과 위반사항이 중대하여 실격처리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설계담당부장은 “공정 설계위원회” (LH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7조)에 실격기준 해당여부를 검토요청한다.
- 공정설계위원회는 사전검토결과를 검토한 결과 해당작품의 위반사항이 실격처리기준에 해당되어 심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설계공모심사위원회에 심사대상 제외요청 할 수 있다.

다. 설계심사위원회 설계심사

- 평가방식은 [3.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 설계공모 참가자가 기존에 공개된 타인 또는 본인의 작품을 표절이라고 판단되는 작품을 제출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 진행과 관계없이 탈락시킬 수 있고 사후에 발견되더라도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라. 설계심사위원회 작품 설명

- 설명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계획에 참여한 주관설계사 또는 공동응모 임직원에게 한하며, 발표 당일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작품별 설명시간은 5분 이내이고 질의응답은 3분 이내로 하되, 작품수 및 작품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설명자는 제출한 설계도집 내용을 중심으로 작품특징 및 설계의도로 한정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익명성 위반, 타 작품과의 비교설명, 시간초과 등 설명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심사위원장은 즉시 발표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마. 설계심사위원회 등의 촬영, 저장 및 인터넷 중계

-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중인 '클린심사제도'에 따라 금번 시행되는 비계량심사는 심사 전 과정이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일반 시민에게 공개한다.
- 심사과정은 인터넷 생중계됨에 따라 심사 참여자의 초상이 촬영되고, 공모참여사의 개인정보 기타 영업 관련 정보 등이 공개될 수 있다.
- 설계공모 참가자(공동응모 포함)는 작품접수와 동시에 모든 참여자는 초상권 사용, 개인정보 제3자제공, 영업비밀 및 저작권 사용(공개) 등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설계공모 참가자(공동응모 포함)는 설계심사위원회 당일 인터넷 생중계에 필요한 범위 내 초상권 사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영업비밀 및 저작권 공개·사용 등에 관한 「심사실황 촬영, 저장 및 인터넷 중계 동의서(서식25)」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심사참여가 불가할 수 있다.

바. 심사위원 사후평가 설문 참여

- 공정한 심사진행과 청렴한 심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심사이후에 설계공모 참여자가 설계심사위원의 성실성, 공정성, 객관성, 시장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심사위원 사후평가 및 청렴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 설계공모 참가자(대표건축사)는 설계심사위원회 당일 심사위원 사후평가 설문자료 가장 적합(심사과정, 채점표 및 평가사유서 등 심사 전 과정을 확인한 자)한 소속직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서식26)」를 제출하며, 해당 직원은 설계심사위원회 이후 LH가 위탁한 기관의 설문조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1.17 당선작 선정

가. 당선작 평가기준 및 작품선정과 관련하여「LH 건축 설계공모 심사 운영지침」을 따르되, 평가 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나. 3작품이상 응모시 1차 심사를 시행하여 2작품을 선정 후 2차 심사에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 작품수가 많을 경우 1차 심사를 수회로 나누어 시행한다.

[응모작품수에 따른 1차 심사 횟수 예시]

응모 작품수	1차 심사(투표제)						2차심사 (채점제)
	1-1차	→	1-2차	→	1-3차	→	
3~4	2작품 선정	→					2작품
5~7	3~4작품 선정	→	2작품 선정	→			2작품
8~10	5~7작품 선정	→	3~4작품 선정	→	2작품 선정	→	2작품
10초과	(응모작품수에 따라 수회 나누어 시행) →						2작품

1.18 당선작 발표

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부고시) 제14조1항에 따라 심사의 결과(평가점수, 평가사유서, 당선작)를 실명으로 공개한다.

나. 당선업체가 법령, 기타 등의 사유로 설계용역을 수행할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지연시킬 경우 심사결과에 의한 차순위 작품 순으로 동 설계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 당선작, 입상작 구분 및 보상

- 2등이하 업체에게 설계권 부여시 보상금 적용 제외한다.
- 제출 작품수가 2개일 경우는 당선작이 선정되었으며, 우수작이 전세 심사위원 중 1등 득표를 20%이상 획득하였을 경우 지급한다.
- 제출 작품수가 3개 이상일 경우, 1차 심사 시 심사위원의 20%이상 추천 시 지급한다.

구 분		제출작품수		비 고
		2개	3개 이상	
당선작		최우수상: 1개	- 최우수상 : 1개	설계권부여
기타입상작		우수상: 1개	- 우수상 : 1개 - 장려상 : 1~3개	설계권부여시 보상금적용 제외
보상 비용	설계용역비 5억 초과	33백만원	- (우수상) 40백만원 - (장려상) 고득점순 30백만원, 20백만원, 10백만원	1억원
	설계용역비 5억 이하	16백만원	- (우수상) 20백만원 - (장려상) 고득점순 15백만원, 10백만원, 5백만원	5천만원

1.19 저작권 및 출판·전시

- 가. 응모 작품은 순수 창작품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팀)에게 있으며, 당선작의 경우 수상이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제3자의 지적재산권이 사용된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서 등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나. 제출 작품의 저작권은 참가자가 가지며, 당선작품의 소유권 및 사용권은 발주자가 가진다. 발주자는 별도 보상 없이 당선작품을 본 설계공모와 관련한 연구용역 등의 보고서 출판, 작품집 출판, 전시, 신문, 방송 또는 기타 매체 등 다양한 홍보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는 본 사업의 수행이나 홍보 이외의 목적으로 작품을 사용할 수 없다.
- 다. 당선자는 당선작의 출판, 전시, 게재 및 발간에 협조하여야 한다.
- 라. 국민의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해 설계공모 출품작에 대한 관련자료(도집, 모형사진 등)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1.20 작품 반환

- 가. 제출된 응모작품은 입상작 발표 후 일정기간 동안 보유하여 전시할 수 있다.
- 나. 작품반환은 반환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응모자가 회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한다.
- 다. 기간 내 미회수 작품에 대하여는 공사에서 임의로 처리한다.
- 라. 제출된 설계도집 및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Chapter 설계지침

- 2.1 지구별 설계방향
- 2.2 사업지구 현황
- 2.3 목표 공사금액
- 2.4 계획지표
- 2.5 부문별 지침

II 설계지침

2.1 지구별 설계방향

가. 공공분양주택 설계추진방향

□ 목표 - 공공분양주택 10대 추진전략 구현에 최적화된 지구 맞춤형 설계추진

추진방향

정책수행 미션 성공

정부정책 물량을 차질없이 수행하며,
특히 **신호희망타운의 성공**을 위하여
업무역량을 집중

LH공공분양주택의 정체성 확립

민간과의 경쟁보다는
정책수요에 충실하면서 주거성능 향상과
고객중심 이미지로 개선

새로운
LH 분양주택의 목표

고객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강소실용주택”

□ 공공분양주택 10대 추진전략

공공주택 품질에 대한 대국민 신뢰 구축을 위한 10대 추진전략 마련

- | | |
|--|---|
| 1 경쟁력있는 후보지 선제 확보
<small>* 5개년 공공분양주택지수급계획 수립</small> | 6 감성 스토리가 있는 품격 있는 조정공간 구현
<small>* 외부공간 조정시설물 디자인 공모 후 대표상품 개발(10월)</small> |
| 2 품질과 디테일이 검증된 주력평면을 개발
<small>* 소비자 선호도조사, 설계 검증 및 주력평면 개발 완료</small> | 7 고객참여형 사업프로세스 도입
<small>* 오픈 프로세스 시행방안 및 고객설계평가단 운영 방안 마련</small> |
| 3 스마트홈 요소기술 구현 및 안전한 환경 조성
<small>* 스마트홈 One-Pass 출납시스템, IoT환경시스템 등 전면설계 10월 이후 적용 예정</small> | 8 하자 없는 제품 생산을 위한 매뉴얼 개발
<small>* 설계기준 등을 집대성한 “제품매뉴얼 1.0” 마련 예정</small> |
| 4 특화된 서비스로 고객 감동 실현
<small>* 보건복지부와 주거서비스 MOU 체결(9월) 및 주거서비스 종합 운영방안 수립(10월)</small> | 9 새로운 분양주택 제품에 맞는 브랜드 개발
<small>* 브랜드 완성 완료 후 연내 신규브랜드 적용</small> |
| 5 거주성에 기반한 새로운 디자인으로 탈바꿈
<small>* 디자인 플랫폼, 토발디자인 분담이행방식 및 디자인 관리제 도입 예정</small> | 10 공공주택 정부정책에 대한 다양한 홍보방안 마련
<small>* 홍보관 건립 및 홈페이지 구축 등 온라인 홍보 추진</small> |

나. 신흥희망타운 설계추진방향

□ 신흥희망타운 7대 추진전략

1. 신흥부부를 위한 **최적의 단지**
2. **아이의 성장에 맞춰 변화하는 집**
3. 보육걱정 없는 **주거시설과 서비스**
4. **안심할 수 있는 친환경 건강주택**
5. **365일 맘껏 뛰어놀 수 있는 특별한 놀이터**
6.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공간**
7. **자랑하고 싶은 디자인**



2 아이의 성장에 맞춰 변화하는 집

아이들의 나이, 성장 등 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설계

- 다양한 방의 구성
- 아이의 성장에 맞춰 변화하는 집
- 아이의 성장에 맞춰 변화하는 집
- 아이의 성장에 맞춰 변화하는 집

4 안심할 수 있는 친환경 건강주택

미세먼지로부터 실내공기질을 보호

- 미세먼지 차단 필터를 적용하여 공기청정기를 대체하는 공기청정 시스템
- 최대 100% 환기율 확보를 위한 고성능 필터를 적용한 공기청정 시스템
- 최대 100% 환기율 확보를 위한 고성능 필터를 적용한 공기청정 시스템

6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공간

확장성 주차 2.3m ~ 2.5m

- 확장성 주차 2.3m ~ 2.5m
- 확장성 주차 2.3m ~ 2.5m
- 확장성 주차 2.3m ~ 2.5m

1 신흥부부를 위한 최적의 단지

우수한 입지조건

- 우수한 입지조건
- 우수한 입지조건
- 우수한 입지조건

3 보육걱정 없는 주거시설과 서비스

아이와 함께하는 Growing Center

- 아이와 함께하는 Growing Center
- 아이와 함께하는 Growing Center
- 아이와 함께하는 Growing Center

5 365일 맘껏 뛰어놀 수 있는 특별한 놀이터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놀이터

-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놀이터
-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놀이터
-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놀이터

7 자랑하고 싶은 디자인

개성있는 외부 디자인

- 개성있는 외부 디자인
- 개성있는 외부 디자인
- 개성있는 외부 디자인

다. 단지특화 설계추진방향

수도권 동북부의 거점이 되는 경제중심도시 "왕숙신도시"

01 경제중심 일자리 도시 산업과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활력도시

- 1 도시첨단산업 조성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기반 마련
- 2 도시남북축의 다기능이 어우러진 복합밴드로 도시활력 증대
- 3 의료, 바이오 핵심 앵커기관 유치로 스마트 메디컬 밸리 조성

10분내 물과 자연을 만나는 생태친화도시 제로에너지 생태도시

- 1 대규모 녹지와 하천을 활용한 제로에너지 도시 조성
- 2 제로에너지 특화단지, 태양광 특화단지
- 3 방음벽제로, 동서방향 하천·녹지축으로 바람길에 통하는 열섬없는 도시

02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보육과 커뮤니티가 즐거운 육아도시

- 1 모든 생활권을 학교-공원(School-Park) 중심의 커뮤니티로 조성
- 2 학교 가는길이 즐거운 안전 통학로 조성
- 3 학교와 도시숲, 스마트팜, 레포츠공원 연계로 도시전체가 배움터

모두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공생도시 공유·공존 상생도시

- 1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생활권안에서 어우러지는 Social-Mix 도시
- 2 공유 모빌리티, 공유 오피스, 공유경제 실현을 위한 도시공간 조성
- 3 원주민 재정착 마을, 훼손지복구와 연계한 영농기반 조성

03 녹색·미래교통도시 편리하고 청정한 미래교통 플랫폼 도시

- 1 미래대응형 자율주행 Transit Mall 조성(남북 5km 구간)
- 2 100m X 100m Walkable Grid의 보행친화도시 조성
- 3 PM, 자전거 등 그린 모빌리티 네트워크 구축

입체·복합건축 공간이 풍부한 디자인 도시 왕숙형 디자인특화도시

- 1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의 관문이 되는 특화이미지 구현
- 2 자연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디자인특화
- 3 철도 하부공간 활용 등 그린 코리더 형성

1) 설계계획방향

Nature	자연환경을 고려한 도심 속 힐링 공간 창출
- 단지 남측 하천 및 수변공원과 연계한 수변형(테라스하우스) 배치 등 주변 자연환경과의 적극적인 연계 - 테라스하우스 주거동은 수변으로 열린 경관을 조성하고, 저층부의 프라이버시 보호 고려 - 수변공원과 단지를 둘러싼 연결녹지, 완충녹지의 유기적인 건축계획 및 개방감 있는 단지 조성	

Community & Children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커뮤니티 활성화 계획 및 아이들 놀이공간 특화
- 주민과의 활발한 소통 및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등학교와 연결녹지를 연계한 커뮤니티 가로 활성화 설계 아이템 도입 “초품아” 단지의 특·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흥미롭고 즐거운 등하굣길 조성 및 자연과 어우러진 체형 공간 조성	

Vital Design	독창적인 디자인 및 도시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특화 계획
측면·배면 디자인 특화구간 및 남동측 통합커뮤니티 주거동 배치구간에 독창적이고 상징적인 경관 조성	

* 위 이미지는 설계계획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적합한 아이디어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2.2 사업지구 현황

가. 지구명 : 남양주왕숙 A-20BL

나.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 내곡리 . 내각리, 진건을 신월리 . 진관리 . 사능리, 퇴계원을 퇴계원리 일원

다. 사업개요 :

1) 사업면적

(단위 : 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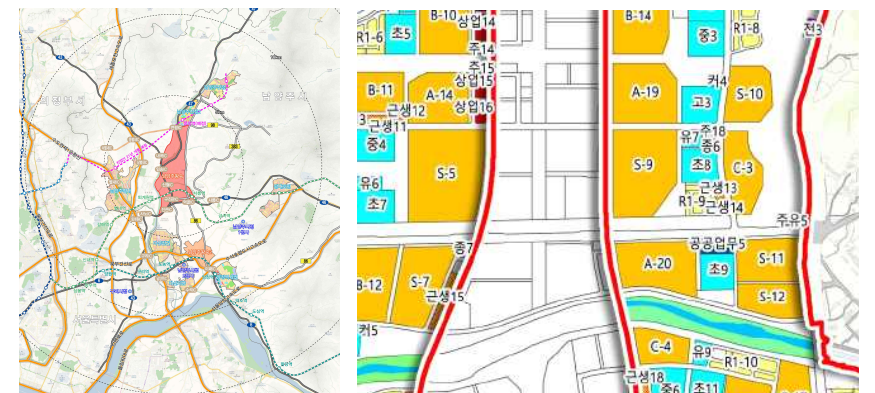
계(㎡)	주 거			공공시설용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생	상업·업무	공원 녹지	교육시설	기타
8,654,278 (100)	181,480 (2.1)	1,899,910 (21.9)	55,194 (0.6)	1,025,933 (11.9)	3,001,045 (34.7)	335,609 (3.9)	2,155,107 (24.9)

2) 택지사업 추진 경위

- '18.09.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국토교통부)
- '18.10.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 '19.09.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9.10.15. 공공주택지구 지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59호)
- '20.10.14. 지구계획 승인신청(LH → 국토교통부)
- '21.07. 공공주택지구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 '21.07.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
- '21.08. 지구계획 승인(예정)
- '21.11. 보상착수(예정)
- '23.12. 공사착공(예정)

3) 위치도

위 치 도 및 주 변 현 황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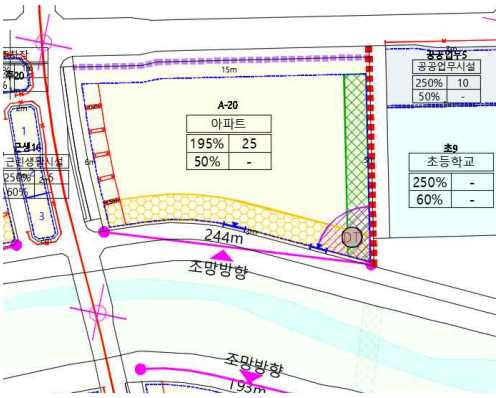
* 생활중심 커뮤니티권역 : 스쿨파크 중심의 커뮤니티시설 설치 계획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 도시 통경축과 수경 녹지축과 연계된 자연친화적 보행가로 조성으로 걷기 좋은 도시 조성 / 구릉지, 수변 등 녹지거점의 자연요소를 적극 활용한 생태친화단지 조성

4) 입지여건

① 단지여건 분석

위 성 사 진	주 요 사 항
	• 동측 : 초등학교, 공공업무시설 • 서측 :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S-13BL • 남측 : 하천(사릉천) 및 수변공원 • 북측 : 주상복합, S-9BL

② 상위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비 고
	용 적 륜 195% 층 수 최고층수 25층 건 축 한 계 선 3M, 6M, 15M 주 차 대 수 1.2대/호 특 이 사 항 - 동측 : 커뮤니티가로 활성화구간 담장설치 불허구간 - 남동측 : 통합커뮤니티 디자인 주거동 배치구간 - 남측 : 수변형(데라스하우스) 배치구간, 조망차폐율 적용구간 - 서측 : 직각배치구간 - 북측 : 측면배면디자인특화구간 * 기타 지구계획 자료 참조

③ 추진일정

블록	용역공고	계약	사업승인	착공	공급	준공
A-20	'21.08	'21.09	'21.12	'23.12	'24.03(분양) '25.06(행복)	'26.06

* 단, LH 사업추진여건에 따라 사업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2.3 목표 공사금액

가. 목표 공사금액 : 214,186백만원 (부가세 포함, 설계가기준)

- 현상응모시 공사에서 제시하는 목표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작품제출시 공사비 추정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반시 감점**
- 당선이후 설계 진행시에도 목표 공사금액을 준수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당선시, 계획설계 확정, 사업계획 확정, 사업승인 신청, 사업승인 완료, 실시설계 전 실시설계 완료 등 필요 단계시마다 목표공사비를 확인, 개략 견적하여 목표공사비 준수여부를 확인하며, 목표공사비 초과시 재설계하며 그 경우 비용은 설계사무소 부담으로 한다. (표준과업지침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이행 필수)
- 최초 공모시 목표 공사금액에서 실시설계 착수 시점까지 물가상승율(생산자 물가지수 등)을 감안하여 재설정 가능하다.

2.4 계획지표

가. 세부 계획지표 **위반시 감점**

블록명	사업면적 (㎡)	사업유형	규 모	세대수		용적률	최고층수	난방방식
				계	55㎡			
A-20	40,896	신혼희망타운	60㎡이하	961	961	195%	25층	지역난방

- 허용 용적률 한도 내에서 총 건설호수(961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단, 55㎡ 타입 세대수를 100%로 계획하여야 한다. **위반시 감점**

나. 주차장 설치기준 **위반시 감점**

사업유형	규모 (주차대수)	지하주차 비율	확장형 주차구획	임산부형 주차구획	경차형 주차구획	장애인 전용주차
신혼희망타운	1.2대/호	100% (상가 제외)	총 주차대수 30% 이상	동당 2~4대	총 주차대수 10% 이하	총 주차대수 3% 이상

- 주차대수는 1.2대/호 이상으로 계획한다.
- 지하주차비율은 100%로 하고, 주동통합형으로 계획한다.(상가 제외)
- 총 주차대수의 30% 이상을 확장형 주차단위 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장애인주차는 총 주차대수의 3% 반영한다. (지자체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참조)
- 주차구획 기준은 2019년 3월 1일 시행 주차장법 시행규칙 기준을 적용한다. (일반형 : 2.5mx5.0m, 확장형 : 2.6mx5.2m)
- 상가 및 부대복리시설용 주차는 관련법 및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별도 산정하여 적용한다.

다. 단지내상가 설계기준 위반시 감점

블 록	건설호수	호당 전용면적	층 고	최고층수
A-20	11호	30~45㎡	3.5m~4.0m	1층

- 상가호수 및 전용면적은 「상가호수 설계기준 및 전용면적 설계기준(붙임4)」으로 계획한다.
- 단지내 상가 주차장은 별도로 구획하도록 한다.

라. 복리시설 설계기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종합보육센터 공모지침서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계획하고 규모는 용적률 한도 내에서 아래 기준 면적 이상으로 계획한다.
- 실내 주민공동시설(종합보육센터 등)의 면적은 3.0㎡~3.5㎡/호 범위에서 계획한다 (계절창고, 관리사무소, 용역원 휴게실 등 부대시설 제외) 위반시 감점
 - * <참고> 주민공동시설의 종류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주민교육시설, 주민휴게시설, 공용세탁실 등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함(참고로 계절창고는 주민공동시설에 포함되지 않음)

2.5 부문별 지침

가. 계획의 주안점

- 신혼희망타운 7대 추진전략에 최적화된 계획을 구상하여 설계한다.
- 분양주택 10대 추진전략에 최적화된 계획을 구상하여 설계한다.
- 친환경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생태환경을 고려한 녹지환경조성, 단열 및 자연환기 등을 통한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환경친화적인 계획기법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 부합토록 설계한다.
- 지구단위계획, 각종영향평가 사항,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지자체 조례 등 관련법규 등을 준수.반영하여야 한다.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등에 부합토록 설계한다.
- 「녹색건축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홈네트워크건물 인증」을 득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신혼) 행복주택의 종류는 기존의 장기임대지구 내 행복주택과 신혼희망타운 내에 소셜믹스를 위한 행복주택(총세대수의 1/3 이상 건립)으로 구분된다.
- (신혼) 신혼희망타운 내의 행복주택은 장기임대주택 관련 법령(주거약자형, 지역편의시설 등)을 준용하되 주택평면 및 마감기준 등은 신혼희망타운 분양주택 설계기준과 동일하게 계획한다.
- 사업성의 극대화를 위해 허용된 세대수 및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하여 계획한다.
- 주거동의 공용면적을 최소화하여 계획하며, 지하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계획하여 주차대수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단지특화설계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포함하여 목표 공사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 주택 생활소음(거실, 화장실 등) 저감방안을 반영하여 설계한다.
- 단지 굴착깊이는 조성계획고(F.L)에서 10M이하로 계획한다. 집수정 및 E/V PIT는 제외하며, 전기실, 발전기실은 포함한다. 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 평가 제외 가능부분은 10M이상 굴착 가능(작품 제출시 근거 자료 제출필수) 위반시 감점

나. 단지계획부문

1) 주거동 배치계획

- 각 주거동은 세대별 사생활의 보호, 채광, 일조 및 통풍이 원활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주변 지형에 따른 영구음영 세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 서로 다른 높이의 주거동을 적절히 배치하여 다양한 경관과 개방감이 조성되고 조망권이 가급적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LH에서 제공한 참고평면의 주택성능(맞동풍, 남향 등)을 확보하도록 계획하는 것을 권장한다.
- LH에서 제공한 참고평면의 주택성능(맞동풍, 남향 등)을 확보하도록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하향식 피난구형(실외기실 검용, 대피공간 無)으로 계획하되, 피난층까지 피난이 가능한 구조로 계획한다. 위반시 감점
- 주동의 향은 단위세대를 기준으로 하여 남향 100%로 계획한다. 남향의 의미는 세대의 주된 면(거실 및 주침실)이 향한 방향이 정남향 기준 동쪽 60도 이내, 서쪽 45도 이내를 뜻한다. 위반시 감점
- 2호조합 이하 주거동은 전체 주거동수의 30%이하로 적용한다. 위반시 감점
- 1개 코어에 4호 이상 조합은 금지한다. 단, 수변형(테라스하우스) 배치구간내 복층형 테라스 하우스를 계획하는 경우, 테라스하우스가 설치되는 층에 한해 6호 이하 조합을 허용한다. 위반시 감점
- 스카이라이프, 공중보행통로 등을 이용한 주거동, 부대복리시설 연결 배치 또는 의장요소 활용을 지양한다.

단 계획시에는 작품제출 시 구조검토서 및 공사비 분석자료를 별도 제출한다. **위반시 감점**

- 교통처리계획도(종합개선안도)의 출입구 위치를 준수한다. **위반시 감점**
- 건축한계선 등 기타사항은 지구단위계획을 준수하여 계획한다. **위반시 감점**
- 단 직각 배치구간의 경계에 주거동이 걸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상 지침에 따른다. (직각 배치구간에 걸친 단위세대의 개구부면이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에 대하여 직각으로 배치할 것) **위반시 감점**
- 주동하부 PIT 공간의 효율적 활용 및 공사비 절감 등을 위해 지하주차계획, 전기차 충전시설, 재활용품 보관소, 건식 셀프세차장 등을 계획하여 공간을 적극 활용토록 한다.

2) 동선계획

- 단지내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안전한 지상공간과 학교가는 길을 계획한다.
- 단지내 주요 보행로는 인접 블록 및 공원, 보행자전용도로, 상업시설, 학교, Bus-bay 등과의 접근성 및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 보도와 차도가 교차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우선하여 보도면 높이가 유지·연속되도록 하며, 단지내 보행자로는 장애자 및 노약자가 이용하는데 장애가 없는 구조 및 보행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 직접 출입을 금지한다.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차가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주택단지의 출입구 및 주진입 보행로에는 자전거길을 설치한다.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의 설치위치는 복지관, 관리소, 상가건물, 주동, 어린이 놀이터, 운동시설마다 1개소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주동의 경우 피로티 및 출입구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설치규모는 지구단위계획 및 지자체 조례 참조)
- 비상차량동선은 각 주동으로의 이차집 차량 및 비상차량의 접근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세대내 대피공간에 접근이 가능토록 계획한다.

3) 옥외공간계획

- 제공된 공사계획평면도의 대지내 조성고는 협의 조정이 가능하나, 대지 밖 조성고의 임의 조정은 불가하다.
- 입주민과 호흡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복리시설 및 옥외공간이 계획되도록 한다.
- 옥외공간은 적정 녹지율로 계획하여야 하며, 특히 생태면적율 등 상위계획, 녹색건축물인증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단지 진입부는 차량 및 보행자 출입으로 이용이 많고, 단지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상징공간이 되므로 충분한 보행공간과 녹지를 확보한다.
- 단지 외부의 토지이용상태를 고려하여 보행의 연결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생태 및 녹지축이 있을 경우 단지 내부와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높이 4.5m를 초과하는 옹벽은 살치를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3m이상 높이의 옹벽설치시, 벽면디자인 또는 벽면녹화를 해야 한다.
-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놀 수 있는 순환적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단순한 면적 공간을 넘어 선적인 공간을 활용한다.
- 학교가는 길과 연계하여 공개공지 등을 활용한 가로특화 놀이공간을 조성한다.
- 주변과 조화되는 지형변형 등을 통해 놀이터 이외의 공간에서도 놀이가 연계되도록 한다.

4) CPTED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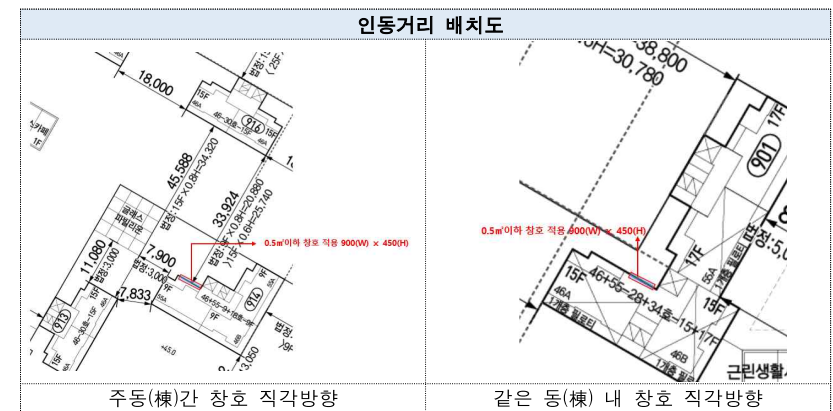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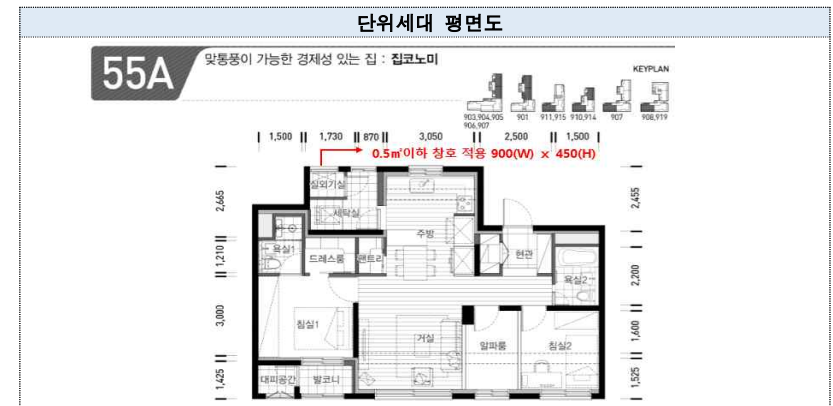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98호('15.4.1)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주택계획부문

1) 주거동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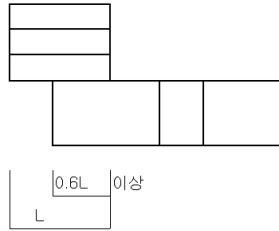
- 주거동은 Mass 계획에서부터 입면(Facade)순으로 디자인 차별화를 추진한다.
- 지나친 조형성 위주의 외관 디자인 및 과도한 장식, 입면요철·절곡 등 거주성을 저감하는 디자인을 지양하고 고유패턴 등을 통한 주동입면, 다채로운 색채계획 강조, 축벽 디자인의 다양화 등 소비자가 선호하면서도 실현가능한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 침실 등 주요 생활공간의 최소 일조·채광 확보를 위하여 거실, 침실, 알파룸 및 드레스룸에는 면적 0.5㎡ 이하의 창호계획을 금지(거실, 침실 등에 큰 창호를 계획하고 추가로 계획되는 창호도 금지)하며, 기타 공간에도 면적 0.5㎡이하 창호 계획을 지양하되, 부득이하게 계획시에는 평면도, 인동거리 배치도에 창호규격(WXH)을 표시하여야 한다. **위반시 감점**

*표현예시



- 기단부, 중층부, 상층부를 구분한 단순 특화보다는 창호모듈, 특화 발코니 등의 변화. 축벽디자인의 다양화, 층별 단위세대 조정 등을 통하여 디자인을 특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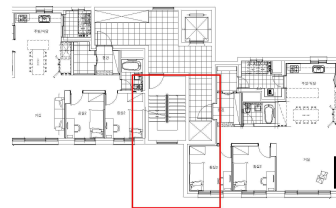
- 단, 유리, 철재 등 현실성이 없거나 과도한 사업비 증가가 수반되는 외장재 표현은 지양한다.
- 주거동 층고는 2.8m 설계, 천장고는 2.3m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벽식구조의 경우 불임자료를 참고하여 설계한다.
- 주거동 계획시 당선(안)의 디자인 계획을 설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투시도(조감도) 및 랜드마크동의 정면/좌·우측면의 색채디자인 계획 및 디자인 컨셉을 특화계획도에 표현하여 제출해야 한다. **위반시 감점**
- 특화계획도의 페이지별 내용구성, 추가표현 등은 자유로이 하되 평가시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해 페이지별로 지정한 필수표현 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위반시 감점**
- 주거동 계획시 2호조합 주거동 수는 전체 주거동 수(부대복리 제외)의 30%이하로 계획하여야 한다. **위반시 감점**
- 주동출입구는 계단실 통과형(승강장에서 주동출입구로 이동할 때 계단실을 통과하는 경우)으로 계획하여서는 안된다. **위반시 감점**
- 주거동 절곡부분은 구조적으로 안전한 벽체검침 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위반시 감점**
 - * 예시(L형) - 벽체검침 길이는 넓은쪽 길이를 기준으로 산정



- 절곡형 주거동(주동포함) 및 평면계획 시 과도한 요철을 지양하여 거실 또는 침실에 일조에 의한 음영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내임길이 1.5m 이하로 계획). 단, 세대 사이 코어(계단실 등)가 계획되어 세대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는 내임길이 1.5m 이상 계획 가능하다. **위반시 감점**



"절곡형 주동 계획 시"
세대내 또는 세대간 요철에 의한 거실, 침실
일조 간섭 발생방지를 위한 내임길이 1.5m 이하



단, 중간에 코어(계단실등)가 계획되어 세대간
거실, 침실이 연결되지 않을 경우 계획 가능

- 주거동의 피트층은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하되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경우 외부환경디자인을 염두에 두고 계획한다.
- 주거동 PIT층 등 지하공간에 사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주거동 하부 PIT는 공간의 효율적 활용 및 공사비 절감 등을 위해 지하주차계획, 전기차 충전시설, 재활용품 보관소, 건식 셀프세차장 등을 계획하여 공간을 적극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승강기 설치기준(불임7)을 준수하여 인원계획하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도록 승강기의 크기를 고려한다.

2) 평면계획

- 단위세대 평면은 LH에서 제공한 주력평면을 60% 이상 적용하여야 하며 기타 평면은 전용 55㎡ 평면만 계획하되(전용 46㎡ 평면은 주력평면 이외 사용 금지) 주력평면 이상의 주택성능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위반시 감점**
 - 주력평면은 제공된 평면의 변형을 일체 금지한다.
- 신혼희망타운 전용55㎡평면은 안방 발코니 확장형으로 계획한다.('2020 신혼희망타운 주력평면' 참고) **위반시 감점**
 - 침실1은 프라이버시가 확보되도록 평면계획을 한다.(ex. 침실1과 다른 침실은 인접하지 않게 계획)
 - 단위세대 평면 계획은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아도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계획한다.
 - 자녀 성장에 맞춰 실 구성이 변화할 수 있도록 가변형 평면으로 계획한다.
 - 분양성 및 선호도가 다소 떨어지는 유형의 평면은 다른 평면에 비해 실별, 요소별 장점을 추가하여 계획한다.
 - 단위세대 평면은 일조에 의한 음영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벽체 꺾임부위, 개구부주위 등에서 단열재 누락, 또는 취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단 세대간 경계벽은 결로방지재로 한다.
 - 거실·식당·주방은 서로 연계하여 이용이 편리한 구조로 계획한다.
 - 세탁기실 등 생활필수기전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각 실은 입주자의 편의성과 분양가격 산정 시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붙박이가구를 가급적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단위세대 가용 공간에 구조물 돌출로 공간 활용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 각 실의 크기는 평형별로 실별 위계에 맞도록 계획한다. 즉, 큰 평형의 단위공간(침실, 거실, 식당/주방, 전실공간, 발코니, 공용부위 등)의 면적은 작은 평형의 그것보다 커야 하고, 동일 평형대에 있어서는 단위공간의 면적은 상호 유사하게 계획함을 원칙으로 한다.
 - 평형별 평면 타입수는 4개 이하를 권장하며, 분양성 및 시공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 에너지사용 및 공사비용 상승이 수반되는 기계환기의 부담을 줄이고 자연에너지를 활용한 자연환기성능 강화를 위하여 평면설계시 다음 사항을 권장한다.
 - 전면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후면부의 창호설치비율을 확대하여 후면기류 유입 확대(현관, 실외기실, 대피공간 제외)
 - 특히, 드레스룸, 화장대 설치 등으로 오염농도가 높은 곳은 통풍에 적합한 창호(미서기창 등)를 외기에 설치하여 기류의 유입을 통한 농도저감 유도
 - 실내에 유입된 공기의 원활한 통과를 위한 실별 출입구 위치 조정
 - 발코니 계획 시에는 다음을 고려한다.
 - 발코니확장형 평면 계획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발코니관련 기준해설」,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등의 지침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 주방과 연계된 발코니를 계획하되 사용성을 최대로 확보한다.
 - 단위세대는 발코니 등 서비스 면적을 활용하여 생활영역이 확장되도록 계획한다.
 - 동일한 평형대의 평면은 유형별로 확장면적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실외기실은 세대 내에 계획하여야 한다. **위반시 감점**
 - 실외기실은 시스템에어컨 설치가 가능하도록 유효길이 1,450×1,030 이상(불임8 참조)으로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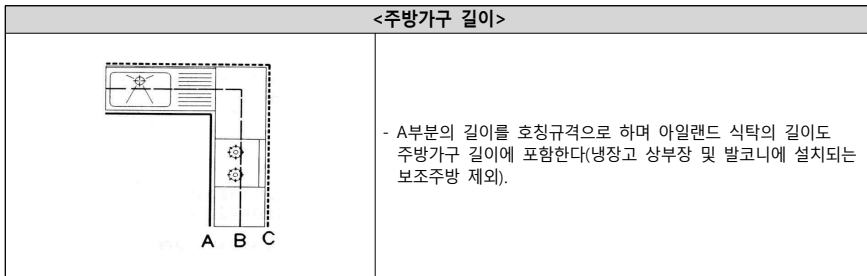
위반시 감점

- 실외기실 및 하향식피난구 통합형 계획시 1,610×1,180이상(붙임9 참조)으로 계획한다. **위반시 감점**
- 반쪽 발코니(안목 폭 750mm 미만)는 지양한다.
- **복층형 하우스** 및 **돌출형 발코니**는 적용하지 않는다. 단, 수변형(테라스하우스) 배치구간은 복층형 테라스 하우스를 허용한다. **위반시 감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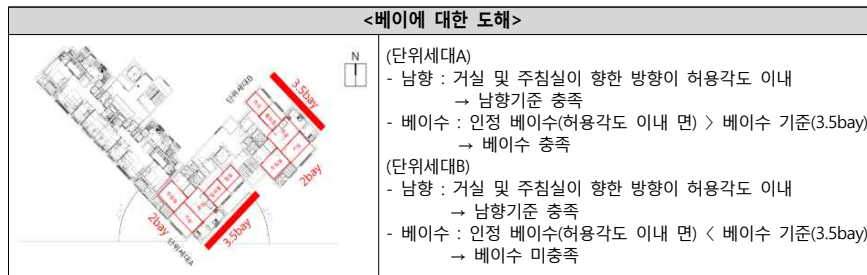
- 실별 안목 최소폭 등 최소 평면구성 시 아래 표 및 세부기준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위반시 감점**

평형규모	안목 최소폭(m)			베이수	욕실수	주방가구 최소길이	비고
	거실	주침실	부침실				
55㎡	3.6	3.3	2.7	3.5이상	2	3.6m이상	

- * 안목최소폭 : 외기에 접하는 면(창문이 있는 면)의 최소 안목치수임
- * 주방가구 길이 산정시 아래 그림과 같이 호칭치수 기준으로 한다(아일랜드 포함, 냉장고장·김치냉장고 상부장 및 발코니에 설치되는 가구 제외).
- * 주방가구길이 산정기준 : 가구 전면길이를 기준으로 한다.



- * 주침실의 안목깊이(장롱이 설치되는 면)는 3.0m 이상 확보한다.
- * 거실 및 주침실은 남향(동쪽 60도 이내, 서쪽 45도 이내)으로 계획되어야 하며, Bay수의 합 산정시 남향(동쪽 60도 이내, 서쪽 45도 이내)이 아닌 실은 제외한다. (이때, 한 개의 실에 대한 bay수 중복산정은 불가능하고 외기와 면한 면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 1베이는 각 실별 안목 최소폭으로 한다. 0.5베이는 각 실 안목최소폭의 1/2이상으로 한다. 0.5베이+0.5베이일 경우에는 1베이로 인정한다.



3) 부대복리시설계획

① 주차장

- 주차대수는 각동(군)별로 최대한 균등 배분하여 계획한다.
- 공급세대 별 주차대수 산정 근거는 서식18에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지하주차장은 주동통합형(지하주차장에서 각 주거동으로 직접 출입이 가능한 구조)으로 계획한다.
 - 주동통합형 지하주차장 계획시 붙임5(주동통합형 지하주차장 계획 설계지침)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지하주차장은 가급적 지하1층으로 계획하고, 대당 효율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하2층으로 계획할 수 있다.
- 지하 2개층 이상 계획시 지하1층은 유효높이 2.7m이상, 지하2층은 2.3m이상 계획한다.(주차장계획도에 표현제출) 유효높이란 지하주차장 바닥마감으로부터 천정 설비시설 등의 마감 끝선까지를 의미한다. **위반시 감점**
- 지하주차장 진입로 및 램프위치 등은 인지성을 감안하여 동선을 계획하고 주동과의 적정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 직선거리 50m이내마다 계단실을 계획하고 진·출입구는 주차대수 150대~300대 내외마다 1개소를 적정 분산 배치한다.
- 환기구는 여러 곳으로 분산 배치하여 자연채광을 확보하고 자연통풍으로 순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지하주차장 직선램프는 내부 폭은 7m 이상, 종단구배는 17% 이하로 하고 곡선램프의 경우 내부반경은 7.5m 이상, 내부차선 종단구배는 14% 이하가 되도록 한다.
- 지하주차장 출입에 이르는 도로폭과 지하주차장내 주도로(램프와 만나는 부분)는 7m 이상 확보한다.
- 지하주차장 상부 토피는 **최소 1.0m**를 확보한다.
- 주차동선의 막다른 도로에는 회차공간을 계획한다.
- 장애인 주차대수는 지자체의 조례를 준수 하여야 한다. 지상에는 장애인이나 비상시 이용 가능한 적정 주차장이 확보 되어야 하며 지하 주차장에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승강기를 설치한다.
- 총 주차대수의 30%이상을 확장형 주차단위 구획(2.6×5.2m)으로 계획한다. **위반시 감점**
- 장애인 주차대수는 총 주차대수의 3%이상으로 하고, 지자체의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위반시 감점**
- 경형 주차단위 구획은 총 주차대수의 10% 이하로 한다. **위반시 감점**
- 임산부 편의를 위해 주동 출입구(지하) 인근에 동별 2~4대의 임산부 주차구획(2.7x5.2m)을 계획한다. **위반시 감점**
- 주차구획기준은 2019년 3월1일 시행 주차장법 시행규칙 준용하여 계획한다.
 - {일반형(2.5x5.0m), 확장형(2.6x5.2m)}
- 확장형 주차장 적용 등에 따라 공사비 절감을 위해 LH형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다.
- 옥외형 승강기 설계시 아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승강기 출입구 전면 바닥높임 및 경사로 설계
 - 출입문 상부 캐노피 및 측부 칸막이 설계
 - 투시형 승강기는 하절기 승강로 내부 적정온도 유지위한 환기시설 계획

② 복리시설(부대시설 관리사무소 포함)

- 복리시설은 기존 단위시설 위주의 계획에서 벗어나, 단지 커뮤니티와 연계하여 계획한다.
- 복리시설을 2개층 이상으로 계획할 경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부득이하게 지하공간에 복리시설의 일부 실을 설치하게 될 경우 선근(Sunken) 설치 등으로 채광 및 환기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 경로당(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실내놀이터로 대체)

○ 어린이집

- 신혼희망타운 단지내 어린이집은 호당 0.2명 이상의 기준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계획한다.
- 어린이집은 보행 및 차량의 접근(아이를 맡기고 찾는 행위)에 유리한 장소에 배치하며 풍부한 옥외공간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어린이집은 가급적 독립된 건축물로 계획하며 입면 미관향상을 위해 외부특화 디자인을 반영한다.
- 유희실에서 직접 외부로 나갈 수 있게 데크 및 외부놀이공간과 연계하여 계획한다.
- 보육실의 크기는 1면 최소유효폭이 4m이상으로 약 20㎡이상으로 계획하고, 보육실은 유아안전을 고려한 배치 및 관리자의 통제가 가능한 구조로 계획한다.
- 2개의 보육실 당 1개의 화장실 설치를 권장, 성인과 유아의 화장실을 분리하고 교사실과 별도의 교재교구실(창고) 계획하고 주방은 유아의 안전을 위해 별도의 실구획 및 문을 설치한다.

○ 주민공동시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총량제 범위에서 확보하되 지구 내 주민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특화 계획을 고려한다.
- 주민공동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참고하여 계획한다.
-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른다.
- 신혼희망타운은 종합보육센터(공동육아나눔터 등)를 계획한다.
- 입주민의 주거 서비스를 위해 500호당 1호의 게스트하우스를 계획하되 주동 하부의 계획은 지양한다.
- 공공분양주택(신혼희망타운 포함)중 수납공간이 적은 전용면적 60㎡ 미만 지구는 총 세대수의 20%의 계절창고 보관함을 계획(동별 또는 2~3개동 통합계획)하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계획하며, 지하에 설치할 경우 환기 및 제습을 고려하여야 한다.

○ 실내놀이터

- 실내놀이터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실외놀이터와 연계하여 계획하고, 특화놀이기구 설치를 고려한다.

○ 주민카페

- 주민 커뮤니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단지 중심위치에 계획한다.

○ 피트니스

- 샤워시설과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소음·진동영향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 관리사무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참고하여 계획한다.
- 경비원 및 환경 미화원 등을 위한 휴게공간을 반영한다. **위반시 감점**

○ 지하 계절창고

- 주동PIT에 계획하고 면적은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산입한다. 계절창고 배치시 습기 예방을 위해 가급적 흠에 접하는 외벽을 피하여 배치토록 한다. 세대수의 20 %수준으로 계획한다.

○ 작은도서관

- 단지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남녀 각각 열람실 및 아동을 위한 좌식형 오픈 도서관을 계획한다. **통합경비실**
- 지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소를 설치하여, 내부에는 에어컨 설치를 계획하여야 한다.

○ 통합경비실

- 지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소를 설치하여, 내부에는 에어컨 설치를 계획하여야 한다.

○ 단지내 상가

- 상가호수 및 전용면적은 불임3. 상가호수 설계기준 및 전용면적 설계기준으로 계획하되, 지구 또는 단지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상가는 주거동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충분한 거리를 이격하여 배치한다.
- 1호의 면적은 전면 4~5m, 깊이 8~10m 이상(호당 30~45㎡), 천장고 4.0~4.5m 규모로 계획한다.
- 단지내 상가 주차대수는 적정 주차대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되, 주차장은 별도로 구획하도록 한다.

○ 기타

- 무인택배보관실은 필로티하부 등을 활용토록 한다.
- 스마트우편함(택배보관기능 포함)은 1층 주동 출입구(로비)에 계획한다.
- 모든 부대시설에는 에어컨 실외기 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③ 신혼희망타운 종합보육센터

※ (별첨) (참고)종합보육센터 공모지침서

◆ 종합보육센터란? ◆

- 신혼희망타운만의 육아특화시설로서 영유아부터 학령기까지 케어시설을 집적화한 육아종합지원 서비스시설이며 아이돌봄 뿐 아니라 육아스트레스 해소 및 육아지원, 주민협력과 돌봄공동체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생활SOC공간을 뜻하며,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돌봄시설(국공립어린이집, 공동육아,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유지하여 안심보육서비스를 제공(지역사회 일부개방)하며 시설간 유기적인 운영을 통해 다양한 육아특화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 향후 전국 200여개 종합보육센터와 주거서비스를 플랫폼화하여 신혼희망타운을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보육문화에 있어 수범모델로 구축할 계획이다.
- <※ '18.11.21 저출산위원회-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LH MOU완료>

○ 도입시설

- 기관보육시설, 가정보육지원시설, 여가생활 지원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시설은 아래와 같다.
- 1~7번까지 시설은 설계공모에 기본 도입시설이며, 기관보육시설은 정부가 인테리여설치 및 위탁 운영할 계획이다.

도입시설 (예시)		
기관보육 시설	가정보육 지원시설	여가생활 지원시설
1.공공립어린이집 2.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3.키즈도서관 (작은도서관, 나눔마켓 포함) 4.실내놀이터 프라이빗 힐링룸 등	5.스마트멀티룸 6.공동거실(주민카페/오픈키친 포함) 7.피트니스 생활공방 등

○ 설계주안점 (설계개념은 종합보육센터 공모지침서 등 참조(별첨))

- 규모는 단지규모, 용적률 등을 고려 통상적으로 호당 1.5㎡~2.5㎡로 계획한다.
- 주동과 별동 또는 주동통합형으로 계획할 수 있다.
- 아동공간은 아동발달과 놀이, 사회성 증대를 고려한 내외부 디자인을 하여야 한다.
- 부모 및 주민공간은 공동육아를 중심으로 한 돌봄공동체 형성(사례-독일 마더센터)과 육아지원 및 여가생활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을 고려한다.
- 수요에 맞춰 공간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기둥과 벽체를 최소화하고 가변성·융통성을 극대화한 구조로 설계한다.(매우 중요)
- 시설 간 연계성,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여 시설연계 및 용도복합을 권장(기관보육시설 제외)하며 시설 규모를 최적규모로 설계한다.
- 기관보육시설은 위탁시설로서 별도 관리운영이 가능하도록 조닝 및 보안계획하고 전기, 수도 등 별도 검침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운영프로그램을 고려한 공간을 계획한다.
- 신혼희망타운 핵심 커뮤니티시설로서 입면, 색채를 특화계획하고 접지층은 놀이터, 테라스 등 옥외공간과의 연계를 적극 도모한다.
- 에너지절감을 위해 자연환기, 채광을 극대화한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130w/호)을 우선 활용하여 냉난방비 최소화하여 주민공동시설 활성화와 관리비 절감을 도모한다.

○ 시설별 지침 (예시)

구 분	시설별 지침
① 어린이집	• 어린이집은 적정규모 이상으로(호당 0.20명 × 4.29㎡)계획하며 2개층 이하로 계획한다. •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간 서비스연계(급식, 부모상담, 특활)를 고려하여 계획(주방 등)한다.
② 공동육아나눔터	• 공동육아나눔터는 어린이집 법적면적 1배 이하로 계획한다. • 장난감은행, 실내놀이공간, 아기사당(수유실), 프로그램실 등을 계획한다.
③ 키즈도서관	• 키즈도서관은 작은도서관 및 육아용품 나눔마켓 기능을 수용한다.
④ 실내놀이터	• 실내놀이터는 공동육아나눔터 및 실외놀이터와 연계하여 계획한다. • 실내놀이터는 공동육아나눔터 내 놀이공간과 차별화된 놀이기구 설치를 고려한다.
⑤ 스마트멀티룸	• 스마트멀티룸은 150㎡이상으로 계획(무주공간)하고 보육수요 발생시 보육시설, 다함께 돌봄센터(초등학생 방과후 교실)로 전환 가능하도록 어린이집과 연계 계획한다. • 다양한 프로그램을 동시 이용할 수 있도록 2개실(중, 소)이상으로 구획하고 최소 1개실은 AV룸 시설을 도입한다.
⑥ 공동거실	• 공동거실은 '내집거실'처럼 편하게 교류하는 공동체 중심공간으로서 주민카페 공간과 공유부엌 프로그램을 수용하여 계획한다.

⑦ 피 트 니 스	• 피트니스는 샤워시설과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소음·진동 영향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⑧기	타 • 화장실은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외에는 공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성인 및 유아 모두가 사용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대규모 루프탑 공간이 형성될 경우 주민휴게·교류 공간, 옥상텃밭(선룸), 엘리베이터 연결을 권장하며 주민프라이버시를 고려하여야 한다.

프로그램 도입 추진중인 주거서비스(예시)

국공립어린이집

- 국공립 어린이집
- 일반 어린이집
- 시간제/야간돌봄
- 데이케어

공동육아시설

- 공동육아방 (영유아, 방과후)
- 장난감 은행
- 작은 도서관
- 실내놀이터

스마트 리빙룸*

- 전담 코디네이터
- 공동거실/복합재 (Public Living Room)
- 생활공간
- 복합지원시설 (주인방*+마을프록+공식)
- 멀티룸/문화센터
- 오픈키친/공유부엌

<기관보육> <가정보육> <주민커뮤니티>

참고이미지

(공동거실)

(아동감성 디자인)

(스마트 멀티룸)

(실내 모래놀이터)

대상	프로그램(예시)	비고
유아/어린이  	키즈 쿠킹 클래스 구연동화·유희놀이/ 촉감놀이 및 클레이 키즈 놀이영어·미술·음악 교실 만들기 교실 (레고, 공예, 교구) 키즈 체능(GYM), 발레 교실 등	지방자치단체 (주민자치센터, 문화센터)
성인 	맨스-에어로빅·PT-다이어트 필라테스·요가·국산도 한글서예·캘리그래프·팝아트 DIY공예/ 손뜨개, 홈패션 등	보건복지부 (돌봄복지 연계)
육아코칭 	예비맘 초보부모 클래스 아이와 함께 놀기 (스마트폰, 장난감 과잉예방) 자녀기질과 양육패턴 실천 육아코칭 (육아고민, 노하우) 손주육아 '마담 클래스' 등	저출산위원회, 보건부, 여가부, 중앙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생활코칭 	미니멀 라이프 실천교실 정리·수납, 청소·가사의 달인 건강한 요리·집반찬·바리스타 스쿨 스타트업 학교 (경력단절여성 등)	※ 육아코칭은 어린이집 연계)
마을공동체 	우리 단지에 맞는 프로그램 만들기 마을여형 (공동체 탐방) 마을보육 공동체 (독일 마더센터 사례) 공동체리더 양성, 흥남소울 예방교육 등	국토부, LH, 중앙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 지자체 운영 프로그램에 따라 변경가능 (저출산위 협조)

라. 구조설계부문

- 건축구조기준(KDS) 및 LH설계지침(구조)을 준수하여야 한다.
- 성능기반설계를 적용해야 할 경우에는 공동주택 성능기반 내진설계지침(대한건축학회)을 따라야 한다.
- 건축물의 구조가 일반적 구조형식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예시) 무량판구조(지하주차장 제외), 라멘구조, 스카이라이프, 주거동의 상·하부 구조형식이 변경 되는 전이구조, 주거동과 인접 주거동을 연결하는 스카이라이프 계획 등] 대표되는 1개동에 대하여 해석모델링을 통한 내진 안전성을 확인하고 적용한 구조형식의 구조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건축 지하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 및 「건축물의 지하구조 내진설계 지침(대한건축학회)」에 따라야 한다.
- 상부구조물의 형식(벽식구조, 라멘구조, 무량판구조, 복합구조 등)은 건축계획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 담당부서는 필요시 구조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증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마. 기계설비계획

- 수도법,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난방방식은 본 지침서에 제시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 오수 및 배수배관은 분리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기계시설물의 성능 및 내구성을 확보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소화배관의 관경은 수리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설계·산정하여야 한다.

바. 전기·통신계획

-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 공동주택승강기 설치기준, 옥외형 승강기 설계기준 등 관련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승강기는 최소 15인승 이상이어야 한다.
- 복리시설 2개층 이상 계획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초고속정보통신은 1등급 이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단, 상위 계획(지구단위계획 또는 주택 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특등급이 명시되어 있거나 분양성 제고를 위하여 특등급을 결정하였을 경우는 특등급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전기통신시설물의 성능 및 내구성을 확보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전기실은 기기배치, 침수방지, 환기, 장비반입, 출입동선확보관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면적으로 계획한다.

사. 조경계획

1). 건축공간 연계

- (실내·외 연계성 확보) 실내·외 놀이터의 다양한 물리적, 기능적 연결 등 통합적 공간설계를 통해 놀이의 연속성 및 다양성 확보
- (복합레벨 활용) 건축물과 놀이공간의 복합레벨을 활용하여 놀이터 이외의 공간에서도 놀이가 연계되는 조경설계 수행



2). 단지계획 연계

- (선형공간 활용)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놀 수 있는 순환적 놀이 공간 조성을 위해 단순한 면적 공간을 넘어 선적인 공간 활용
 - * ‘학교가는길’ 을 연계한 가로특화 놀이공간조성, 공개공지 활용 등
- (지형활용) 주변과 조화되는 지형변형 및 활용을 통해 입체적이고 유기적인 다양한 활동 도출



3). 사회·환경변화 대응

- (패밀리존 확보) 포스트코로나 및 미세먼지 등에 대응하여 ‘아동 동반형 가족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놀이공간 조성
- (놀이커뮤니티 특화) 거리두기로 좁아진 생활반경에 따라 단지내에서 아이와 함께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놀이공간 특화
 - * 물놀이장, 어린이정원, 팜가든, 캠핑가든, 클라이밍, 야외영화관 등



* 위의 이미지는 특화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적합한 아이디어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 실내·외 놀이터의 다양한 물리적, 기능적 연결 등 통합적 공간설계를 통해 놀이의 연속성 및 다양성을 확보한다.
- 건축물과 놀이공간의 복합레벨을 활용하여 입체적이고 유기적인 다양한 활동을 도출한다.
- 놀이공간은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놀 수 있는 순환적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단순한 면적 공간을 넘어 선적인 공간을 활용한다.
- 학교가는길과 연계하여 공개공지 등을 활용한 가로특화 놀이공간을 조성한다.
- 주변과 조화되는 지형변형 등을 통해 놀이터 이외의 공간에서도 놀이가 연계되도록 한다.
- 포스트 코로나 및 미세먼지 등에 대응하여 “아동동반형 가족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패밀리존 놀이 및 운동공간을 조성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로 좁아진 생활반경에 따라 외부가 아닌 단지 내에서 아이와 함께 충분히 취미와 여가시간을

- 보낼 수 있는 다양한 놀이 특화공간을 계획한다.
- 실내외 놀이터의 다양한 물리적, 기능적 연결 등 통합적 공간설계를 통해 놀이의 연속성 및 다양성을 확보한다.
 - 건축물과 놀이공간의 복합레벨을 활용하여 입체적이고 유기적인 다양한 활동을 도출한다.

(참고) 공공분양주택 특화계획도 작성기준

- 공공분양주택 특화계획도는 아래 작성기준을 따른다.
 - 특화계획도의 페이지별 내용구성, 추가표현 등은 자유로이 하되 평가시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해 페이지별 지정된 내용을 반드시 표현하여야 한다.
 - 주거동 디자인 계획을 설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투시도(조감도) 및 랜드마크동의 정면/좌·우측면의 색채디자인 계획 및 디자인 컨셉을 특화계획도에 표현하여 제출한다.
 - 단지투시도(조감도) 및 보행자 레벨의 투시도, 랜드마크동 전개도에는 외부색채계획 및 색채디자인 컨셉을 표현 하여야 하며, 입면 디자인에 커튼월의 표현은 금지한다.
 - 색채디자인 표현시 줄눈, 외장재료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되 도면과 다른 과장된 표현을 금지한다.

구 분	페이지별 지정내용	비 고
공 공 분 양 주 거 동 의 특 화 계 획 도 표 현 항 목	• 특화계획도① : 단지투시도(조감도) 1컷	추가표현 가능
	• 특화계획도② : 랜드마크동(1개동) 정면/좌·우측면 전개도 표현	
	• 특화계획도③ : 지구별 특화요소 표현	

Chapter 평가지침

3.1 설계평가기준

3.2 설계평가 세부기준

3.3 감점기준

III 평가지침

3.1 설계평가기준

구 분	장기임대		공공분양	
	주안점	디자인·지역연계	주안점	실용성·분양성
정 성 평 가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지역커뮤니티를 활성화 하며 입주민의 안전과 편리성을 고려한 임대주택		수요자 중심의 분양성을 우선하는 실용적이고 편리하며 개성있는 공동분양 주택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장기임대 항목	공공분양
심 사 위 원 회 평 가	고객중심 건축계획	단지, 주동계획 효율적 동선계획 편리한 거주 주택평면의 실용성	30	40
	디자인	공모의도와 부합성 디자인의 창의성 주동입면 디자인 지구별 특화계획	20	15
	공동체 활성화	맞춤형 커뮤니티 계획	10	10
	설계구현	현장 실현 가능성	5	5
	계		70	70
감 점	법령·지침위반		최대-3.0점	최대-3.0점

※ 평가 우선순위 : ①고객중심 건축계획 → ②디자인 → ③공동체 활성화 → ④설계구현

3.2 설계평가 세부기준

가. 디자인, 수요자·분양성 중심 평가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 착안 사항	배점
고 중 건 계	단지 계획	• 단지 외부와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및 바람길 형성 등 쾌적한 단지환경을 제공한 계획	15
		• 보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연속적인 보행동선을 확보하며, 레벨계획 및 배치계획 등 계획시 주동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계획	
		• 세대별 채광, 일조, 통풍, 조망권(산, 하천, 공원 등) 확보를 위한 계획	
		• 입주자의 안전과 편리성을 중시하는 동선 및 지하주차장 계획	
	편리한 거주 [평면계획]	• 거주자의 필요성에 의한 공간구성을 위하여 가변성을 고려하여 계획 • 수납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가구 및 기구(식탁, 냉장고, 침대 등)의 배치를 고려하여 계획 • 주부중심의 주방 및 발코니 계획 강화(주방가구 적정성, 효율적 동선, 합리적 수납공간 등) • 마감재, 가구, 가변형 공간구성 등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반영한 선택평면 확대 고려한 계획	15
디 자 인	실용성 [분양성]	• 아파트 공간 활용 증대 - 과도한 Duct, 복도, 사공간 최소화 계획 등 효율적인 공간계획 • 입주자 활용 및 수요자 니즈를 감안한 지하층 활용 계획(공용창고 등) • 에너지 절감 및 저관리형 녹지 형성 등 주거비가 저렴한 계획	10
	디자인 창의성	• 실용성에 기반한 새로운 디자인(특화계획도 참조 평가) - 주변경관과의 조화롭고 창의적인 입면 디자인 계획 - 지나친 조형성 위주의 외관 디자인 및 과도한 장식, 입면요철·절곡 등 거주성을 저감하는 디자인을 지양하고 고유패턴 등을 통한 주동입면, 다채로운 색채 계획 강조 등 소비자가 선호하면서도 실현가능한 디자인을 제시 -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단지조성을 위해 투시도(조감도) 및 랜드마크 등에 다채로운 칼라의 외부 색채디자인을 표현하고 색채디자인에 대한 컨셉 등을 제시	5
	주동 입면 디자인	• 입주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차별화된 디자인(특화계획도 참조 평가) - 주동 출입구(1층, 지하)의 공간 구성, 마감 등 디자인 특화 제안 - 문주 및 커뮤니티시설(부대복리시설, 종합보육센터 및 상가 등) 디자인 특화 제안 - 보행자 시각에서의 정문, 메인 가로변 등에서의 보행경관 특화 제안	5
	특화 계획	• 측배면 디자인 특화구간 및 DT 특화제시를 고려한 계획 • 하천 및 수변공간과 연계한 수변형(테라스하우스) 배치 등 자연환경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고려한 계획 • 초등학교와 연결녹지를 연계한 커뮤니티 가로 활성화 계획	5
	공동체 활성화 [고객지향]	• 입주계층의 특성을 분석하여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커뮤니티 설계 및 주거 서비스 제공 기획 아이디어 제시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문화, 자연, 공간의 유기적인 연계 계획 • 주민공동시설의 합리적인 공간 및 동선계획을 통한 입주자 이용편의성 제고 계획	10
공 동 체 활 성 화	설계구현	• 당선안의 현장실현가능성 (목표공사비 준수 여부 등)	5
합 계			70

3.3 감점기준

구 분	감 점 항 목	감점	비 고
법규 위반	• 대지경계선에 의한 높이제한	0.5점/10호	최대감점 -3.0점
	• 인동간격에 의한 높이제한	0.5점/10호	
	• 대피공간 설치기준 위반	0.5점/10호	
	• 기타 법규 위반	0.5점/동, 건	
지침 위반	• 주력평면 60% 이상 적용 위반 (공고시 제시한 주력평면 사용)	(기본 -1.0)+ (-0.5점/10호당)	
	• 주동향(남향비율) 적용 위반(적용비율 : 지구별 구분)	0.5점/동	
	• 목표공사비 산출근거제출 위반 (서식25) 및 공사비 초과 등 (*목표공사비 산출근거 자료제출 위반 참조)	(미제출 -1.0점) (초과시 -0.5점)	
	• 2호조합 주거동수 위반(전체 주거동수의 30% 이하)	0.5점/동	
	• 상위계획 항목 위반 (최고층수, 배치구간, 차량출입구 위치 등)	0.5점/(동, 건)	
	• 용적률 및 세대수 위반 (세대수 위반은 5호당)	0.5점/건	
	• 주거동의 조합 또는 길이, 최고층수, 층고 등 위반	0.5/건	
	• 주차대수 및 지하주차 비율 등 계획 위반	0.5점/5대	
	• 주차계획 기준 위반	0.5점/항목	
	• 복층형 또는 테라스형 단위세대 계획 금지	0.5점/동, 건	
	• 설계지침 중 각 항목별 감점 고지항목 위반	0.5점/동, 건	
	• 단지배치도 및 모형의 레벨표시 위반, 표현 패턴 위반	0.1점/건	
도서 작성 위반	공통	• 특화계획도 페이지별 필수 표현항목 위반	0.2점/건
		• 외부 색채디자인 미반영(투시도(조감도), 전개도(3면), 컨셉	0.5점/건
		• 도집, 모형의 토지이용계획표현, 수목 표현 위반	0.1점/건
		• 투시도 및 조감도 등 입체화(3D) 표현 위반	0.1점/건
		• 모형 입면요철 표현부분 축척 위반	0.1점/건
		• 도면 축척 위반	0.1점/건
		• 도집 표현 위반	0.1점/건
		• CG 표현 위반	0.1점/건
		• 지정 도서 매수, 규격 위반	0.1점/쪽, 건
	제출물 누락	- 돌출발코니 설계시 부위별 상세도 누락	0.1점/건
		- 설계 수행계획서[서식23] 누락	0.1점/건
		- 기타 제출물 누락	0.1점/건
	모형	• 주변시설용지표현위반 (CAD단선, 색상, 명암표현 불가)	0.1점/건
		• 바닥판 표현위반: 단지계획도를 출력하여 부착	0.1점/건
		모형규격 위반 - 건축물	0.1점/동
		- 바닥판, 프레임, 모형경계	0.1점/건

- 목표공사비 산출근거 자료제출 위반: 「목표공사비 산출근거 자료(서식24)」 기술검토서에 첨부 및 산출 증빙자료(Excel) USB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엑셀자료는 사전검토시 내용을 확인한다. (감점기준: 미제출시 -1.0점/건 + 목표공사비 초과 시 0~3% 이하: -0.5점, 3% 초과~5% 이하: -0.8점, 5% 초과 시 -1.0점 감점)
- 익명성 유지 위반, 사전접촉, 사전설명금지 위반 및 비리·부정행위에 감점은 별도임.
- 감점항목별 기준이 중복될 경우(동별기준, 건별기준 등) 감점총점이 높은 항목을 적용한다.
- 지구별 사업여건에 따라 감점사항 조정운영이 가능하다.

IV

Chapter

제출도서 및 작성기준

4.1 제출물 종류

4.2 제출물 작성요령

4.3 제출물 목록

IV 제출도서 및 작성기준

4.1 제출물 종류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설 계 도 집	A3	30부	
축 소 모 형	지구별	1식	
기 술 검 토 서	A4	10부	인동거리배치도 포함
U S B 메 모 리	-	1개	
구 비 서 류	서식참조	1식	

※ USB메모리 자료 및 그림파일은 *.hwp, *.jpg, *.dwg, *.ppt(버전제한 없음, 기본폰트만 사용) 형식으로 제출. 단, 단지계획도, 주동입면/단면, 돌출발코니 단면상세, 단위세대 평면 등 제출도면 일체는 반드시 CAD(*.dwg) 파일형식으로 제출(사전검토 시 평가 활용 예정)

※ 3D 모델링 자료는 스케치업(*.skp, ver2010이하)으로 USB에 수록

※ CAD파일은 외부참조가 없는 각각의 단일파일로 제출

※ 제출물 종류 및 수량은 지구별 특성에 맞게 운용가능

4.2 제출물 작성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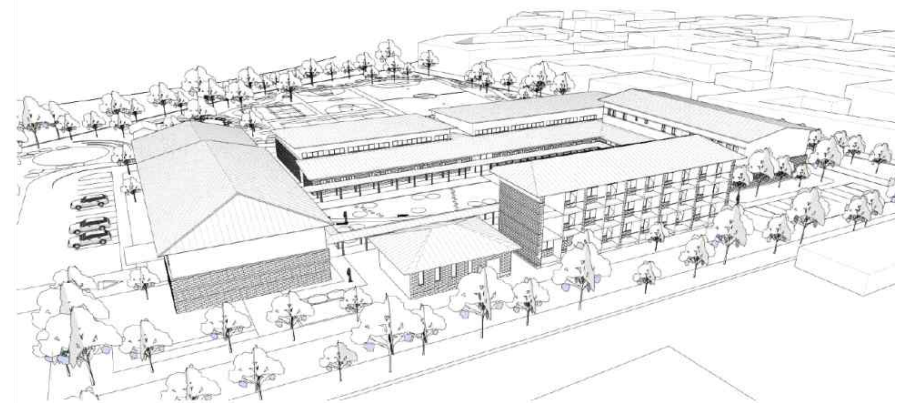
가. 공통사항 위반시 감점

- 모든 도서는 제공된 서식과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한다.
 - 모든 도서의 실명표기는 한글로 표기한다. [예: 침실1(O), Room1(X)]
 - 모든 도서는 지정된 축척 및 매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 모든 도서는 제시된 색상표현을 준수하여야 한다.
 - 명기된 축척이외는 임의로 조정 가능하며 축척과 방위는 정확히 표현하여야 한다.
 - 모형경계예시도에 명기되어 있는 지구명(글자크기 및 폰트, 위치지정)을 그대로 사용한다.
 - 별도의 내용이 없는 한 해당블록 이외의 부분은 제공된 토지이용계획도로만 표현한다.
 - 제목표현시 지구명과 블록명 이외의 설계개념 또는 중심테마를 나타내는 제목사용은 할 수 없다.
 - 주거동과 대지의 크기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임의 조정시에는 설계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탈락여부를 결정한다.
- 각 도면의 건설설명 부분에 한하여 CG표현 사용이 가능하다.(색상 사용불가)
- 특화계획도를 제외한 모든 도서에는 컬러표현 및 투시도 및 조감도 등 입체화 표현(3D)은 금지한다. 단, 기본구상도, 부대복리시설계획도에서는 '스케치업을 사용한 3D 표현 (라인드로잉 기반으로 그림자, 색상(특화계획도에 한함), 투명도, 재료 등을 표현할 수 있으며 별도의 플러그인(plug-in) 프로그램이나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통한 렌더링 작업은 할 수 없다.)'을 허용한다. (위반시 감점 후, 도집 내 위반사항은 임의 삭제하여 심사자료 배포)
- 특화계획도는 27페이지의 "(참고) 공공분양주택 특화계획도 작성기준" 내에서 설계사에서 제시하는 특화계획을

가장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임의로 선택하여 작성이 가능하다.

- 단지계획도(도면)의 작성시에는 아래 작성기준에 따른다.
 - 주거동의 심벌은 기준층 평면을 기준으로 하되 1층 출입구를 표현하고, 평형규모, 층수 및 세대수를 표시한다.
 - 옥외공간에는 차량(비상포함)동선, 보행동선 및 놀이터, 운동장 등 법적시설에 대해서는 구획경계만 표현한다.
 - 지형차 극복을 위한 옹벽 등은 표현가능하나 수목표현, 조경시설물 및 바닥문양패턴을 일절 금한다.
 - 주동의 그림자표현을 금지하며, 차로 및 주차장은 해치 및 패턴을 금한다.
- 하자 유발 가능성이 큰 돌출발코니는 최대한 지양하되, 입면변화를 위해 부득이 돌출발코니 계획시에는 단위세대 이형평형 조합부위의 우·오수 단면상세도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검토시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별도평가 한다.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의 참고 사례 (1)



※이미지 제공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온고당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의 참고 사례 (2)



※이미지 제공 : (주)파크이즈 건축사사무소

나. 설계도집 **워반시 감점**

- 규격 : A3 (420mm×297mm, 건식복사용지)
※ 단, 단지계획도, 주차장계획도는 “도면 및 모형경계예시도” 에서 제시된 경계로 작성해 A3 규격으로 접어서 제출
- 색상 : 칼라사용 금지(무채색으로 표현, 특화계획도 제외)
- 제본 : 스테이플러+테이프제본 (단면인쇄, 링 또는 와이어 사용금지)
※ 블록별(A2, A3)로 작성하되 하나로 제본하여 제출
- 표지 : 「설계도집 표지양식(서식15)」을 참조하여 작성
- 도집내용 및 표현방법

구 분	매수	표 현 방 법	비고	축척
기본 구상도	1매	• 주변 현황분석(광역.인접 현황, 공공시설(학교 등), 인접 단지.마을 등을 포함한 계획개념 및 의도를 표현		-
단지 계획도	1매	• 설계개요 • 주거동상부에 동별로 평형규모, 세대수 및 층수의 표현 ex) 120-16호-8F, 120-16호-12+15F 등 • 1개 동이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층이나, 평형으로 계획된 경우는 서로 다른 층이나 평형의 부위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구분 표시 • 단지조성 계획도 및 인접대지 레벨 등고선 표시(1m 마다 표시, 주동 전후 면 G.L 계획도, 보행 및 차량동선 계획도 높이 1m마다 표시) • 주거동을 활용한 부대복리시설은 해당부위에 시설용도 명기 • 주차장별 주차대수, 옥내.외 주차대수, 진출입 동선 계획 등을 명확하게 표현 • 주동출입구는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현 (▲표시) • 공통사항의 단지계획도 작성기준 준수 • 단지계획도 하부에 인접대지 레벨, 단지조성계획을 확인 할 수 있는 단지 중형단면도를 표현	1/800	
특화 계획도	1매 (임대) 3매 (분양)	• 지구특화계획 지침에 따른 특화계획 필요 • 표현형식 및 방법은 효율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설계자가 임의로 작성 • 특화디자인요소(지구별 해당 디자인요소 작성) • 주변 경관과의 조화롭고 창의적인 주동 입면디자인 특화 계획, 주동 출입구 공간 및 마감 특화제안, 문주, 커뮤니티시설 외부디자인, 보행자 시각에서의 가로경관 View 투시도 등을 표현하되, 페이지별 지정된 표현항목과 외부 색채디자인, 디자인 컨셉 등을 제출 • 지구특화계획 지침에 따른 특화계획 표현 필요 • 특화디자인요소(지구별 해당 디자인요소 작성) • 기타 표현형식 및 추가내용, 방법 등은 효율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설계자가 임의로 작성	칼라 사용 가능	
단위세대 평면도	2매	• 발코니를 이용하여 생활영역을 확장한 평면으로 표현하되, 발코니 부위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점선 등으로 발코니 구분선 표현 • 전체치수 및 주요 실의 치수를 표현(안목치수와 중심선치수 모두 표현) • 특화형 주택을 포함한 모든 단위세대평면을 표현 • 동일규모 평형이라도 축세대형과 같이 다른 형태인 경우 포함 • 해당평형의 주동키플랜(non scale)을 단위세대 상부에 표현	매수 증가 가능	1/100

구 분	매수	표 현 방 법	비고	축척
주거동 평면도	2매	• 전체치수 및 주요치수를 표현 • 주거동 평면은 주동유형별 모든 1층 평면도, 기준층평면도 표현(동일 형태의 주동일 경우 1개 주동만 표현) (라멘구조의 경우 지하층 설계현황 확인을 위해 지하층 추가 표현) • 1층 평면도 표현시 주동접근 및 주변공간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하여 주변 계획을 포함한 표현(주동출입구, 램프, 보행동선등)		1/400
주거동 입면도	2매	• 입면계획은 대표적인 주동 유형을 2개형 선정하여 2면 이상 표현 • 입면계획시 커튼월 표현은 금지함		1/400
주차장 계획도	2매	• 옥내도면과 옥외층도면을 모두 기재하여 상호 연관관계를 표현 • 옥내주차장은 주차장별 주차대수 및 대당소요면적을 표기하고, 데크형 주차장은 노출부분의 입면계획 포함하여 작성 • 통합형 주차장의 주동출입구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현(▲표시) • 전기실, 지하저수조 등 지하구조를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필요시 접어서	1/800이상 (1/600)
부대복리 시설 계획도	2매	• 관리사무소, 복리시설, 상가 등 전체치수 및 주요실의 치수를 표현 • 각종 평면도, 입면도(1면이상), 주단면도 • 주요 내외장재료와 실의 명칭을 표현, 각 실별 면적표를 명기		1/300
모형사진	1매	• 제출되는 축소모형의 사진(3컷 이내, 흑백)을 도집에 기재 • 계획개념 등 부가설명 일체표현 금지		(3컷)
돌출발코 니 계획 상세도 (해당지구)	(+1매)	• 돌출발코니 계획 상세도면을 제출, 사전검토시 실현가능성 별도평가 • 단위세대 이형평면 및 단위세대 평면의 수직 또는 수평 이형조합에 발생 하는 단위세대 입면·평면·단면도 및 우·오수배관 평면/단면 상세도(배관 치수, 절곡길이 등 표현)	돌출 발코니 계획시 (층매수 불포함)	1/50
계		17매		

※ 매수 산정 시 표지 및 목차 제외, 속지 불허

다. 축소모형 **워반시 감점**

－ 제출규격

- 모형케이스 : 박스형태로 제작하여 축소모형을 넣어 제출.
박스의 한쪽 부분을 열리게 하여 축소모형을 꺼낼 수 있도록 하고 모서리 부분은 검정색 테이프 마감. (심사 시 모형참치대로 사용)
높이 : 300mm, 재질 : 10T 폼보드, 색상 : 백색
- 건축물 : 압출스티로폼(백색)
- 크기 및 축척 : (가로*세로) 700*700, (축척) 1/800
- 표현범위 : 제공자료 중 “도면 및 모형경계 예시도” 참조

－ 표현방법

- 바닥판 : 우드락(백색)에 도집의 단지계획도를 가감 없이 부착(모형축척에 맞추어 우드락1mm를 중첩하여 표현)한다.
- 해당 블록 이외의 공동주택지, 근린공원, 단독주택, 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학교 등은 제공된 토지이용계획상 CAD 단선(색상, 명암표현 불가)으로 표현한다.
- 아파트 주동 등 건축물은 압출스티로폼 Mass모형으로 건물의 외벽끝선을 기준으로 표현한다.

- 주동의 지붕은 경사와 평지붕으로만 표현(옥탑은 직사각형표현)하고 주동외부에 층수구분, 창문표현을 위한 줄눈표현(선긋기, 칼집내기)등 일체의 표현을 금한다.
- 건축물 Mass 위 젯소바름, 니스칠 등 일체의 부가적 기법사용 금지한다.
- 상기내용을 위반한 제출물에 대하여 감점부여 후, 감점사항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본심사전일 17:00까지)토록 할 수 있으며, 미 이행시에는 본심사 모형전시를 아니할 수 있다.(사전검토 회의시 결정)

라. 기술검토서 **위반시 감점**

- 내 용 : [4.3 제출물 목록 참조]
- 규격 및 재질 : A4(210mm×297mm) 백상지
- 제 본 : 스테이플러+테이프제본 (단면인쇄, 링 또는 와이어 사용금지)
※ A4 규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접어서 제본가능

- 인동거리 검토도 작성방법(축척 1/800)

- 법적이격거리 산정은 「주동의 높이산정 기준(붙임6)」에 따른 법적거리와 계획거리를 함께 표현한다.
- 인동거리 검토도는 축척을 1/800로 작성하며 도면 및 모형경계예시도에서 제시된 경계에 맞추어 제작하며 A4 규격으로 접어서 제본한다.
- 조경수목표현, 그림자 표현 등 기타 도면효과를 일체 금지한다.
- 창호규격(0.5㎡이하인지의 여부 등)을 표시할 것
- ‘일조시뮬레이션 결과’ 기술검토서 포함하여 제출한다.

마. 심사위원 설명자료 **위반시 감점**

- 설명자료는 ppt 확장자 형식의 파일로 작성(마스터 사용은 금지하며 배경은 그림이 없는 백색 또는 흑색 중 선택)한다.
- 제출된 설계도집의 내용을 변경 없이 사용하여야 한다.
- 도집 색상 변경, 페이지 내 이미지 요소 위치변경, 페이지 순서변경, 음영, 동영상, 플래시 소리추가 및 애니메이션, 시뮬레이션, 일러스트 등 일체의 편집을 불허한다.
- 내용물은 제출된 설계도집과 동일한 색상 사용한다.
- 지구별 10페이지(표지,목차 제외) 이내로 작성하고, 작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바. 작품 제출 요령

- 작품제출시 구비서류 이외의 모든 제출도서와 모형은 제출도서 종류별로 포장하여 제출한다. (우편 등 배달 접수는 하지 않음)
- 모형 1식 개별 포장
- 제출도서(설계도집, 기술검토서)는 1개의 견고한 종이박스에 넣어 포장, 제출한다.
- 구비서류는 서류봉투에 넣어 별도 포장 없이 제출한다.

사. 당선 후 제출물

- 당선업체는 설계공모 당선작품 홍보를 위해 설계도판 및 동영상을 당선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사사무소명 노출금지)
- 설계도판 : A0규격으로 작성하여 파일 및 출력물(폼보드10T에 부착)제출
- 동영상파일 : 스케치업을 활용한 애니메이션으로 2분30초~3분 이내로 제작(파일형식 : MP4, 프레임규격: 1920 * 1080)

4.3 제출물 목록

구 분	제출물 목록	비 고
응 모 등 록 및 작 품 제 출 확 약 서 제 출 시	• 설계공모 응모신청 및 작품제출 협약서	서식 1
	•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서식 2
	• 청렴 서약서	서식 3
	• <u>공정거래 이행 협약서</u>	서식 4
	• <u>기술자 보유현황(신진, 신규, 여성, 창업건축사 제한공모) -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수행 확인서</u>	서식 5
질 의 회 신 및 사 전 검 토 확 인 시	•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6
	• 심사위원 기피 신청서	서식 7
	• 위임장	서식 8
작 품 제 출 시	설계도집	서식 9
	축소모형	
	USB	
	구비서류	• 응모신청 및 협약서 접수증 서식 1
		• 설계공모 작품접수서 - 건축사업무신고필증, 대표건축사 인장 서식 10
		• 대표자 선임서 서식 11
		•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서 서식 12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서식 13
		• 서약서 서식 14
		• 사전접촉 금지 확인서 서식 15
		•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서식 16
	기술검토서	서식 17
		• 설계개요 및 시설면적표 서식 18
		• 면적 산출표 서식 19
		• 부대복리시설 면적표 서식 20
		• 관련법규 검토서 서식 21
	(인동가리검토도 포함)	• 설계도서 사전검토 서식 22
		• 동별 주차대수 배분결과 검토표 서식 23
		• 설계 수행계획서 (사업승인, 실시설계 동시추진지구) 서식 24
		• 목표공사비 산출근거 자료 (공공분양지구) 서식 25
심 사 당 일	• 심사실황 촬영, 저장 및 인터넷 중계 동의서	서식 26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서식 27
당 선 이 후	• 전기 및 소방 사업수행평가 서류	E-BID 양식참조
	• 설계도판	A0 폼보드 부착
	• 애니메이션 동영상	스케치업, MP4

Chapter 설계계약

5.1 계약관련 일반사항

5.2 과업범위

5.3 용역기간

5.4 LH 설계공모 당선건수 제한

5.5 기타사항

V 설계계약

5.1 계약관련 일반사항

가. 공통사항

- 계약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정부계약예규 등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 전기 및 소방분야 추정가격이 정부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관련법령에 따른 전기 및 소방분야 사업수행평가를 받아야 한다.
-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설계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타 입상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거나 계약상대자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당선자에게 실적 사유가 발견된 경우 계약 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계약 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선금 및 기성금 회수)로 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기타 입상자의 경우에는 입상 무효, 상금을 회수하며 경우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당선자는 용역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 및 면허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발주처는 차순위자에게 설계권을 승계할 수 있다.
- 설계담당부서는 설계심사위원회 보완 요구 등의 사유로 당선자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선자는 그 적정성을 협의 후 계약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발주처에 의한 설계 기간의 증가나 설계변경의 범위에 따라 발주처가 적절한 대가를 지급한다.

나. 설계용역비

- 설계용역비는 본 설계를 추진함에 있어 기본과업 및 추가과업을 수행하는 공종별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조경)설계비를 포함한다.
- 실내디자인, 환경/색채디자인 설계업무 비용 포함,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비, 녹색건축 예비인증비 등 각종 인증비용을 포함하되, 지반조사 및 도시가스 설계비는 제외한다.
- 주택설계용역 계약전 설계, 실내디자인, 환경/색채디자인 설계업무 등 과업내용 또는 업무대가 기준 등의 변경으로 설계용역비가 조정될 경우 계약시 반영한다.

다. 공동응모

- 공동응모(분담이행방식 포함)의 경우 대표자(1인)를 지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사사무소내 공동 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1인)를 지정하여야 한다.
-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정부계약예규 등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 공동으로 응모시, 구성원 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하며, 구성원 중 참여 지분율(출자비율)이 많은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등록하고 계약하여야 한다.
- 당선작으로 선정된 업체(당선자)가 설계용역계약 체결시 전기, 통신 분야 및 소방(기계소방.전기소방) 분야, 조경분야는 응모시 참여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하여야 한다.(단, 당선자가 해당 분야 자격요건 충족시에는 예외)
- 제연설비 설치대상 지구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기계소방) 등록업체만 가능하다.(전기소방은 예외)
- 대표자는 분담이행업체의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분담이행업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 전기 및 소방분야 사업수행능력평가

- 당선자로 선정된 공모안을 제출한 자는 당선일로부터 3일 이내 사업수행평가서류를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LH전자조달(<http://ebid.lh.or.kr>) → 고객센터 → 자료실 → 전기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지침 및 소방공사 설계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지침을 다운로드 후 관련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 사업수행평가는 응모신청시 공동이행, 분담이행으로 참여한 설계사를 대상으로 하며 응모신청이후 참여자 변경이 불가하다.
- 사업수행평가 결과,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의 규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 및 소방공사 설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제6조에 의한 입찰참여자격 점수 이상을 얻어야 한다.
- 평가결과 이의제기 시 재심사 실시하며 재심사 완료 즉시 재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 평가결과에 점수를 얻지 못할 경우 1회에 한해 새로운 전기 및 소방분야 설계업 등록업체를 선정, 동일한 절차를 거칠 수 있다. (단, 설계공모 시 제출한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와 격차가 상당하거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5.2 과업범위

가. 기본과업

- ① 건축, 토목, 기계, 전기.정보통신, 조경분야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설계
 - 단지계획,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시방서, 예산내역서 작성
 - 설계에 필요한 구조계산, 용량 및 부하계산 등의 도서 작성
 - 선택품목(기본,추가) 적용에 따른 수량 및 예산내역서 작성
 - ※ 도시가스 설계, 지반조사는 제외
- ② 상위계획 변경 등에 따른 설계도서의 수정 및 보완
- ③ 사업승인도서 및 각종 심의도서 작성 (변경 포함)
- ④ 사업승인업무 및 각종 심의업무 (변경 포함)
- ⑤ 설계의 안전성 검토 관련 업무 수행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구)
 - '건설공사진흥법' 개정에 따라 실시설계 시 설계안정성 검토보고서 작성 및 건설안전의 위험요소 제거, 감소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 주택 및 건축공사 위험요소 프로파일 (COTIS/공모관리/공지사항) 참고
- ⑥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등 관련 업무 수행
- ⑦ 최종성과물 관련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⑧ 설계지원업무(설계요류 및 누락 검증 등)
 - 공사착공시 현장설계설명회 실시(착공 후 14일 이내)
 - 착공초기(착공+60일 이후) 지역본부와 회의후 설계도서 보완(월 1회 이상)
 - 월 1회 현장 정기방문(착공이후부터 140일까지)
 - 건본주택 건립시 설계와 공간환경디자인 도면의 정합성 검토
 - 각종 인증서류의 현장 인수인계 및 인증관련 설계도서 정합성 검토
 - 지구별 설계에 대한 민원발생시 적용설계의 타당성 입증 등 대응
 - 기타 착공전 관련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나. 추가과업

- ① 실내디자인, 환경/색채디자인 설계업무
- ② 인증 및 평가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평가
 - 녹색건축 및 공동주택성능등급(녹색건축 경유) 인증(해당지구)
 - 소음예측평가(해당지구)
 - 건강친화형주택 인증(해당지구)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해당지구)
 - 결로방지 설계기준 적용 평가서 작성(해당지구)
 - 장수명주택 인증(해당지구)
 - 교육환경영향평가(해당지구)
 - 기타 주택건설사업에 수반되는 인증기준 설계적용 및 획득(해당지구)
- ③ 성능기반설계(지진파 산정 포함)(해당지구)
- ④ 지형측량(해당지구)
- ⑤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설계(해당지구)
- ⑥ 추가(사후)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설계관리업무
 - 설계단계(본 용역) 준공후 현장여건 변동에 따라 발생가능한 인허가 변경 및 설계관련 추가과업 수행을 위하여 진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 ⑦ 디자인감리 업무
- ⑧ 공사의 해당지구 각종 기술대상 응모요청 접수시 출품관련 업무지원
 - ※ 시공책임형 CM입찰 방식*으로 발주 되는 지구는 설계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설계사(CM대상 공종별 설계 담당자 포함)의 기술 인력은 시공사가 운영하는 합동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시공책임형 CM입찰방식 : 설계단계에서 시공사를 조기 선정하여 시공사의 노하우 등 선진기술요소를 설계단계에 반영하여 설계도서의 시공성 향상 및 설계 최적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식
- ⑨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업무

5.3 용역기간

가.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52개월(단, 조경공사 착공일까지)

나. 계획설계 및 기본설계 : 사업승인 신청(21.10) 전까지

다. 실시설계

- ① 실시설계도서 완료(견적도서 송부시) : '23.07.
 - 실시설계도서 사전검토 : 실시설계완료 30일 전 지역본부에 도서검토 의뢰
 - 실시설계도서 완료 : 발주 90일전(단, 공종별 발주일정기준에 따름)
- ② 견적 완료(발주 완료)
 - 실시설계완료일로부터 90일간
 - 예산내역서 작성완료 : 발주 30일전(단, 공종별 발주일정기준에 따름)
(단, 발주 30일전 완료하되 공종별 발주일정기준에 따름)
 - 설계내역 심의체 반영 및 최종예산 작성완료 : '23.09.
(단, 발주 30일전 완료하되 공종별 발주일정기준에 따름)

라. 용역완료(건축공사 공사착공시)

- ① 실시설계도서 착수시는 감독원과 사전협의(실시설계착수, 중간검토, 용역완료일정 등)하고 관련 일정표 등을 제출 후 착수해야 한다.
 - ※ 본 지구는 분양주택 조정(집중설계) 분담이행을 적용함
 - 조정집중설계(조정설계를 건축공사 착공단계 및 조경공사 착공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집중설계하는 방식)용역 완료(조경공사 착공 시)

마. 추가(사후)설계관리업무

: 건축착공일로부터 사용검사일(단, 준공도면 완료시)

바. 디자인감리용역(해당지구) : 건축공사착공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

사. 과업기간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운영계획 일정을 기준으로 하며, 일정변경시 조정될 수 있다.

5.4 LH 설계공모 당선건수 제한

가. 공고일 현재 연간 우리공사 공동주택 설계공모 및 건축물 설계공모 용역[기술공모형 입찰(공공임대리츠), 민간공동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재생 혁신지구 등 제외] 당선건수가 아래표의 "2021년 당선가능 건수" 이상인 업체는 응모할 수 없으나, 본 공고일 이전에 추가당선회(최대1건/1년)를 부여받은 업체는 응모가능하다.

나. 당선건수 적용은 설계용역평가 결과 공고일(매년 3월말)에 따라 당해연도 4.1일부터 차기년도 3.31일까지 당선시점으로 판단한다.

* ex) '21.03.15 공모 후 '21.04.15 작품선정시 '21년도 당선건수로 적용, '21.01.15 공모 후 '21.03.15 작품선정시 '20년도 당선건수로 적용

다. 당선일 기준으로 수주제한 건수가 충족되면 작품이 접수되어 있을 경우에도 후속심사에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설계비10억 이하의 소규모 설계공모의 경우, 전기통신·소방(전기)·소방(기계) 당선건수 산정에 서 제외한다.

마. 공동응모는 참여사 모두 각각의 건수를 산정한다.

바. 계획설계 분리발주시 계획설계, 기본·실시설계 당선건수를 각각 1건으로 산정한다.

사. 공정거래법 의한 기업집단은 동일한 설계업체로 간주하여 당선건수는 합산, 연간 당선가능건수는 다수건수 업체의 건수를 적용한다.

아. 설계업체 평가 (매년 3월 발표) 미대상업체는 B등급에 준하여 당선건수 적용한다.

자. 건축설계사무소가 2년 연속 S등급 평가를 받은 경우 4건+α를 적용하고 전기통신분야 2년 연속 S등급 평가를 받은 경우 6건+α를 적용한다.

차. 건축설계사무소가 2년 연속 D등급 평가를 받은 경우 추가 당선기회 부여(+α)를 제외한다.

카. 설계공모 시 불공정 행위가 사후에 발견 될 경우 설계용역평가 최하등급을 적용한다.

타. 턴키, PF사업, 당선이후 사업이 취소된 경우 및 용역규모가 변경되어 설계용역비가 50%이상 축소된 경우에는 건수산정에서 제외한다.

파. 분담이행방식의 전기·통신, 소방업체가 응모신청 및 작품제출확약 이후 타 지구에 당선되어 응모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하. 연간 공동주택 설계공모 및 건축물 설계공모 용역 당선건수와 관련하여「LH 설계수행방안」 및 「LH 건설기술 설계용역 평가지침」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 2021년 공동주택 설계공모 당선가능 건수

설계업체 평가결과 (21년 발표)		2021년 당선가능 건수			비 고
		건축	전기통신, 소방(전기), 조경	소방(기계)	
S등급	최상위 5%	3건 (+α)	5건(+α2)	9건(+α2)	(+) : 추가당선회, 년간 1건으로 제한
A등급	상위 15%				
B등급	중위 60%	2건 (+α)	4건(+α2)	6건(+α2)	
C등급	하위 15%	1건 (+α)	3건(+α2)	3건(+α2)	
D등급	최하위 5%				

* 추가 당선 기회(α)

구 분	대상건수	비 고
추 가 당 선 기 회	α = 최대 1건 (α = α1+α2)	α
추가당선회 부여 업체	α1 = 13개 업체	①
동 반 성 장 형 응 모 기 회	α2 = 동반성장형 추가당선회 부여	②

α2 : 업체 간 경쟁 유도 및 동반성장을 위해 '2021년 공공주택 설계추진방안'의 설계용역 계획 물량의 75% 초과 공고 시 모든 설계공모 참가자에 동반성장형 응모기회 부여. 단) α1을 사용하여 추가당선회 업체는 제외(해당 시점 시 COTIS에 사전 공고)

5.5 기타사항

가. 하도급

- 계약자는 전문협력분야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하도급 표준계약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동의서를 첨부, 신고해야 한다.
- 공사가 사업규모, 공급방식 등을 검토하여 실내디자인, 환경/색채디자인 설계업무를 관련 전문 업체를 통해 수행토록 할 경우에 설계자는 역량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선정에 대해 공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설계평가

- 본 설계용역은「LH 건설기술 설계용역 평가지침」기준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향후 건축설계공모 용역심사 시 연간당선건수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제재는 LH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동일분야에 응모시 적용한다.
- 분담이행(건축·전기·소방)의 경우 부실벌점업체의 감점은 설계금액비율에 따라 적용한다.
- 건축설계공모 용역에 응모한 업체 및 관련기술자(건축 : 책임건축사, 전기·소방 : 책임기술자)는 관련 협회에서 발부한 부실벌점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당선된 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설계공모에 참여한 설계기술자 명단을 제출한다.

- 설계공모에 참여한 설계기술자는 당선작품의 설계구현을 위해 계획 및 기본설계에 참여하여야 하며 설계기술자를 임의로 변경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경고장 또는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다. 당선작의 수정 및 보완

- 당선된 자는 상위계획의 변경 및 공사 요구, 사업승인과 관련된 제반 규제사항과 심의 결과 등에 따라 각종 관련 설계도서를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 당선작품에 위법사항, 설계구현 불가 등 설계자의 사유로 인해 당선작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경고장 또는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라. 설계추진시 인.허가 및 설계VE

- VE운영방안에 따라 VE자료준비 및 보고서 작성 등으로 공사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설계자는 공사에서 계획하는 추진일정에 맞추어 각종 심의, 사업승인 등을 위한 설계내용의 설명, 자료 보완(조감도 등), 보고, 관계기관협의, 회의참석, 자료작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설계단계별 공사비 추정

- 응모작은 공사에서 제시하는 목표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당선이후에도 최종 견적 결과 공사에서 제시하는 목표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자는 설계단계별로 공사비 추정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에서 제시하는 목표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착수계 제출시점에 견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 목표공사비를 초과할 경우 공사가 설계수정을 요구하면 설계자는 설계도서를 수정하여야 하며 설계자의 사유로 인해 목표공사비가 초과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경고장 또는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Chapter

붙임자료 및 관련서식

VI 불임자료 및 관련서식

[불임자료 목록]

- 불임 1. 건설기술자 신고인원수 기준 100인 이상 건축사사무소 현황
- 불임 2. 비리·부정행위 등 제재기준
- 불임 3.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 불임 4. 상가호수 설계기준 및 전용면적 설계기준
- 불임 5. 주동통합형 지하주차장 계획 설계지침
- 불임 6. 주동의 높이 산정 기준
- 불임 7. 공동주택 승강기 설치기준, 공동주택 인승별 승강로 규격
- 불임 8. 심사위원명단

[불임 1]

건설기술자 신고인원수 기준 100인 이상 건축사사무소 현황

※ 대한건축사협회 등록기준(2021.2.1 현재)

구분	업체명	등록기술자(명)	비고
1	(주)해안 종합건축사사무소	753	
2	(주)희림 종합건축사사무소	509	
3	(주)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436	
4	(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360	
5	(주)나우동인 건축사사무소	326	
6	(주)간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316	
7	(주)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275	
8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241	
9	에이앤유디자인그룹 건축사사무소(주)	215	
10	(주)토문 건축사사무소	206	
11	(주)창조 종합건축사사무소	201	
12	(주)현대종합설계 건축사사무소	195	
13	(주)행림 종합건축사사무소	182	
14	(주)무영 종합건축사사무소	168	
15	(주)엠에이피한터인 종합건축사사무소	153	
16	(주)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147	
17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디자인캠프문박디엠피	134	
18	(주)공간 종합건축사사무소	130	
19	(주)범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130	
20	(주)상지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127	
21	(주)해마 종합건축사사무소	123	
22	(주)시아플랜 건축사사무소	110	

[붙임 2]

비리·부정행위 등 제재기준

1. 적용기준

제재대상 행위	공모참여제한1) (감점2)
1. 심사위원에 대한 사전접촉3) (제3자를 통한 사전접촉4) 포함)	제재 결정일로부터 6개월 (1.5점)
2. 심사위원에 대한 사전설명3) 금지위배 (제3자를 통한 사전설명4) 포함)	제재 결정일로부터 1년 (2점)
3.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비리행위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뇌물·금품수수 등) - 부정행위 : 자기회사의 이익이나 상대방 회사의 불이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부도덕한 행위(담합, 청탁, 의도적 심사방해 등)	제재 결정일로부터 2년 (10점)
1, 2, 3 : 공통적용 사항	위약금 부과(5)

※ 주기 :

- 1) 공모참여제한 : LH에서 시행하는 건축설계공모에 한하며, 제재 결정일 이후 공고분부터 해당 기간동안 설계공모 참여를 제한한다.
- 2) 감점 : 설계공모 공고 후에서 심사완료 전까지 당해 공모관련 비리·부정행위 등으로 제재 결정시에는 당해심사에 한해 감점을 적용한다.
- 3)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 : 당해심사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위원(예비 심사위원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행위에는 SNS 등을 포함한다.
- 4) 제3자를 통한 사전접촉(설명) : 평가위원과 알고 지내는 지인 등을 통한 해당 공모참여자의 접촉(설명) 행위
- 5) 비리·부정행위 등으로 제재 결정시 설계용역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 단, LH가 지급해야 할 신고포상금이 위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포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적용방법

- 가. 업체가 소속직원의 제재대상 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업체에게 제재기준을 적용한다.
- 나.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으로 인한 제재의 효력은 건축업체(공동응모시 건축업체 전체)에 적용한다.
- 다. 동일한 설계공모 건에서 비리·부정행위 등으로 2건 이상 적발시 제재수위가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 라. 사전접촉, 사전설명 및 비리·부정행위 확인서는 당해 심사위원에게 청구한다.
- 마. 사전접촉, 사전설명 및 비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필요시 감사실 및 수사기관 등에 조사의뢰

[붙임 3]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구 분	지급금액
1.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 위반신고(SNS 포함) *제3자를 통한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 포함	· 1천만 원 이하
2. 심사와 관련한 심사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의 부정행위 및 비리 행위 신고 - 비리행위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 (뇌물·금품수수 등) - 부정행위 : 자기회사의 이익이나 상대방 회사의 불이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부도덕한 행위 (담합, 청탁, 의도적 심사방해 등)	· 2천만 원 이하 * 단, 금품수수(100만원초과) 및 담합은 3천만이하 지급

* 해당 설계공모건의 신고포상금 총액은 설계용역비의 1%범위내에서 최대한 지급 (단, 위반 업체의 위약금 납부후 해당 금액내에서 지급)

[붙임 4]

상가호수 설계기준 및 전용면적 설계기준

□ 상가호수 설계기준

주택유형	단지 규모별	상가 설계호수		비 고
		수도권	지방대도시	
분 양 택	300호 이하	0~2	0~2	• 수도권 중 경기북부 외곽지역은 여건에 따라 소도시 (군) 기준 적용 - 지방대도시 : 광역시, 도청소재지,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 1호 배치시 관리동에 배치 검토
	400	2~3	2~3	
	450	4	4	
	500	5~6	4~5	
	600	9	6	
	700	10	7	
	800	11	8	
	900	12	9	
	1,000	13	9	
	1,000호 초과	초과 200세대당 상가 1호 추가		
국 민 대	300호 이하	0~2	0~2	• 권장 전용면적 : 30~45㎡ (전면폭 4m이상) - 단, 인지성이 높은 코너점포 및 슈퍼용도 등은 활용성을 고려 하여 45㎡ 이상 적용
	400	2~3	2~3	
	500	4	4	
	600	5	5	
	700	6~8	6~7	
	800	9	7	
	900	10	8	
	1,000	10	8	
		1,000호 초과	초과 250세대당 상가 16호 추가	

□ 상가호수 증감 체크리스트

구 분	증가 검토	감소 검토
배후인구 (수요 측면)	• 2개 이상 단지 마주보는 경우(가로변 상가) • 반경 500m 이내 배후인구가 다수, 커뮤니티 중심지 • 학교·청사·전용단독·업무지구·역세권·대형공원 인접지구 → 잠재구매자 다수 • 소득(구매력) 높은 경우 (직장, 주택가격·자가율·주택규모 고려) • 잠재 구매층 연령 (초등학생 전후 30대 학부모 다수) → 지출능력 높음 • 수요·마케팅 분석결과 상가수요가 충분히 있는 경우	반대의 여건인 경우
상환경 (접근성 및 흡인력)	• 상가가시성(코너, 4거리), 평지, 통근·통학로에 상가점면 도로폭 4차선이상 → 양호한 주민접근성 및 이용성 • 특화디자인(스트리트몰, 테라스상가), 앵커 집객시설 계획 → 집객력 증가	
상권특성 (경쟁 측면)	• 1km(2km) 이내 대형할인점이 없거나 영향이 적을 경우 • 500m 이내 중심상업시설, 대형 근린상가가 없거나 업종 및 대상계층이 달라 경쟁관계에 없을 경우 → 양호한 상권 경쟁관계 • 향아리 상권의 길목 등 → 고정수요 • 공공임대상가(청년 창업, 사회적기업 등) 도입시 → 공적역할 강화	

* LH 미래주택기획처-8022(17.12.14) 공문 참고 작성, 장기공공임대의 경우 공공임대상가로 운영되므로 사전 검토 필요

[붙임 5]

주동통합형 지하주차장 계획 설계지침

○부지특성 지침

- 산지, 하천 등 지하수위가 높게 예측되는 지구는 지하주차장을 최소화
- 외부 유입수가 지하주차장 내부로 인입되지 않도록 설계
- 암반지형의 경우 지하주차장보다 지상 건물식주차장 계획

○주차장 층수/형식 지침

- 지하주차장은 지하 1개층 원칙
- 경사지의 경우 하계 결로 예방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데크형 구조로 계획
- 데크형 지하주차장은 하계 결로 및 동계 동파예방을 위해 오픈부위에 미서기창(갤러리창) 계획
- 일반지형의 경우 주차장 상부 일부를 외기에 노출시켜 하계 결로 예방

○개방형 계획 지침

-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쉼터를 계획
- 직선거리 50m 이내마다 계단실을 계획
- 전·출입구는 주차대수 150대~300대 내외마다 1개소를 적정 분산 배치
- 환기구는 여러 곳으로 분산 배치하여 자연채광을 확보하고 자연통풍으로 순환할 수 있도록 계획

○누수방지 지침

- 흙에 묻히는 지하구조물은 외방수 설계 원칙
- 집수정은 쉼터, 헬륨, 계단실, 코너부 등 주차구획 공간에 지장이 없는 구간에 50m 이내로 계획

○소방, 피난, 안전 지침

- 직선형램프는 내부 폭 7m 이상, 곡선형램프는 내부반경 7.5m 이상 계획
- 차로의 주 통로는 너비 7m 이상으로 계획
- 주동 연결통로는 이용자의 사용성 등을 고려하여 길이, 굴절 최소화
- 주동 연결통로가 불가피하게 길어질 경우에는 피트층 일부를 기둥식 구조로 계획하여 출입이 원활하도록 계획

[붙임 6]

주동의 높이 산정 기준

층수 (층)	국민임대(행복주택 포함) 등		공공분양(공공임대)	
	경사지붕	평지붕	경사지붕	평지붕
5F	14.85	15.90	15.05	16.10
6F	17.65	18.70	17.85	18.90
7F	20.45	21.50	20.65	21.70
8F	23.25	24.30	23.45	24.50
9F	26.05	27.10	26.25	27.30
10F	28.85	29.90	29.05	30.10
11F	31.65	32.70	31.85	32.90
12F	34.45	35.50	34.65	35.70
13F	37.25	38.30	37.45	38.50
14F	40.05	41.10	40.25	41.30
15F	42.85	43.90	43.05	44.10
16F	45.65	46.70	45.85	46.90
17F	48.45	49.50	48.65	49.70
18F	51.25	52.30	51.45	52.50
19F	54.05	55.10	54.25	55.30
20F	56.85	57.90	57.05	58.10
21F	59.65	60.70	59.85	60.90
22F	62.45	63.50	62.65	63.70
23F	65.25	66.30	65.45	66.50
24F	68.05	69.10	68.25	69.30
25F	70.85	71.90	71.05	72.10
26F	73.65	74.70	73.85	74.90
27F	76.45	77.50	76.65	77.70
28F	79.25	80.30	79.45	80.50
29F	82.05	83.10	82.25	83.30
30F	84.85	85.90	85.05	86.10

* 층고 : 2.8m

* 기준높이 = G.L + (임대 0.6m/ 분양 0.8m) + (층수×층고)

* 주동높이(경사지붕) : 기준높이+0.25m (트랜지트+지붕층외곽)

* 주동높이(평지붕) : 기준높이+1.3m (파라넷 높이) (단, 투시형 난간일 경우 기준높이 +0.25m 적용)

[붙임 7]

공동주택 승강기 설치기준

(전용면적 30㎡초과)

구분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
7층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8층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15	15+15
9층	15	15	15	15	15	15	15	15	15+15	15+15	15+15
10층	15	15	15	15	15	15	15+15	15+15	15+15	15+15	15+15
11층	15	15	15	15	15	15+15	15+15	15+15	15+15	15+15	15+15
12층	15	15	15	15	15+15	15+15	15+15	15+15	15+15	15+15	15+15
13층	15	15	15	15	15+15	15+15	15+15	15+15	15+15	15+15	15+15
14층	15	15	17	15+15	15+15	15+15	15+15	15+15	15+15	15+15	17+15
15층	15	15	17	15+15	15+15	15+15	15+15	15+15	17+15	17+15	17+15
16층	15	15	15+15	15+15	15+15	15+15	15+15	15+15	17+15	17+15	17+15+15
17층	15	17	15+15	15+15	15+15	15+15	15+15	17+15	17+15	17+15	17+15+15
18층	15	17	15+15	15+15	15+15	15+15	17+15	17+15	17+15	17+15+15	17+15+15
19층	15	17	15+15	15+15	15+15	15+15	17+15	17+15	17+15+15	17+15+15	17+15+15
20층	15	17	15+15	15+15	15+15	17+15	17+15	17+15	17+15+15	17+15+15	17+15+15
21층	15	15+15	15+15	15+15	15+15	17+15	17+15	17+15+15	17+15+15	17+15+15	17+15+15
22층	15	15+15	15+15	15+15	17+15	17+15	17+15	17+15+15	17+15+15	17+15+15	17+17+15
23층	17	15+15	17+15	17+15	17+15	17+15	17+15+15	17+15+15	17+15+15	17+15+15	17+17+15
24층	17	15+15	17+15	17+15	17+15	17+15	17+15+15	17+15+15	17+15+15	17+17+15	17+17+15
25층	17	15+15	17+15	17+15	17+15	17+15	17+15+15	17+15+15	17+17+15	17+17+15	17+17+15+15
26층	17	15+15	17+15	15+15+15	17+15	17+15+15	17+15+15	17+15+15	17+17+15	17+15+15	17+17+15+15
27층	17	15+15	17+15	15+15+15	17+15	17+15+15	17+15+15	17+15+15	17+17+15	17+15+15	17+17+15+15
28층	17	15+15	17+17	15+15+15	17+15	17+15+15	17+15+15	17+17+15	17+17+15	17+17+15+15	17+17+15+15
29층	17	17+15	17+17	15+15+15	15+15+15	17+15+15	17+15+15	17+17+15	17+17+15+15	17+17+15+15	17+17+15+15
30층	15+15	17+15	17+17	15+15+15	17+15+15	17+15+15	17+17+15	17+17+15	17+17+15+15	17+17+15+15	17+17+15+15
31층	15+15	17+15	17+17	15+15+15	17+15+15	17+15+15	17+17+15	17+15+15	17+17+15+15	17+17+15+15	17+17+15+15
32층	15+15	17+15	17+15+15	15+15+15	17+15+15	17+15+15	17+17+15	17+15+15	17+17+15+15	17+17+15+15	17+17+15+15
33층	15+15	17+15	17+15+15	15+15+15	17+15+15	17+15+15	17+17+15	17+15+15	17+17+15+15	17+17+15+15	17+17+15+15
34층	15+15	17+15	17+15+15	17+17+15	17+15+15	17+17+15	17+17+15	17+15+15	17+17+15+15	17+17+15+15	17+17+15+15
35층	15+15	17+15	17+15+15	17+17+15	17+15+15	17+17+15	17+15+15	17+17+15	17+17+15+15	17+17+15+15	17+17+15+15
36층	15+15	17+15	17+15+15	17+17+17	17+15+15	17+17+15	17+15+15	17+17+15	17+17+15+15	17+17+15+15	17+17+15+15
37층	15+15	17+17	17+15+15	17+17+17	17+15+15	17+17+15	17+17+15	17+17+15	17+17+15+15	17+17+15+15	17+17+17+15
38층	15+15	17+17	17+15+15	15+15+15+15	17+15+15	17+17+15	17+17+15	17+17+15+15	17+17+15+15	17+17+15+15	17+17+17+15
39층	15+15	17+17	17+15+15	15+15+15+15	17+17+15	17+15+15	17+17+15	17+17+15+15	17+17+15+15	17+17+15+15	17+17+17+15
40층	15+15	17+17	17+15+15	15+15+15+15	17+17+15	17+15+15	17+17+15	17+17+15+15	17+17+15+15	17+17+15+15	17+17+17+15

(전용면적 30㎡이하)

구분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
8층	15	15	15	15	15	15	15
9층	15	15	15	15	15	15	15+15
10층	15	15	15	15	15+15	15+15	15+15
11층	15	15	15	15	15+15	15+15	15+15
12층	15	15	15	15+15	15+15	15+15	15+15
13층	15	15	15+15	15+15	15+15	15+15	15+15
14층	15	15+15	15+15	15+15	15+15	15+15	15+15
15층	15	15+15	15+15	15+15	15+15	15+15	15+15
16층	15+15	15+15	15+15	15+15	15+15	15+15	17+15
17층	15+15	15+15	15+15	15+15	15+15	17+15	17+17
18층	15+15	15+15	15+15	15+15	15+15	17+17	15+15+15
19층	15+15	15+15	15+15	15+15	17+15	15+15+15	15+15+15
20층	15+15	15+15	15+15	17+15	17+17	15+15+15	15+15+15
21층	15+15	15+15	15+15	17+17	15+15+15	15+15+15	15+15+15
22층	15+15	15+15	17+15	15+15+15	15+15+15	15+15+15	17+15+15
23층	15+15	15+15	17+15	15+15+15	15+15+15	15+15+15	17+17+15
24층	15+15	15+15	17+17	15+15+15	15+15+15	17+15+15	17+17+17
25층	15+15	17+15	15+15+15	15+15+15	15+15+15	17+17+15	15+15+15+15
26층	15+15	17+17	15+15+15	15+15+15	17+15+15	17+17+17	15+15+15+15
27층	15+15	17+17	15+15+15	15+15+15	17+17+15	15+15+15+15	15+15+15+15
28층	15+15	15+15+15	15+15+15	15+15+15	17+17+17	15+15+15+15	15+15+15+15
29층	17+15	15+15+15	15+15+15	17+15+15	15+15+15+15	15+15+15+15	17+17+15+15
30층	17+17	15+15+15	15+15+15	17+17+15	15+15+15+15	15+15+15+15	17+17+17+17
31층	17+17	15+15+15	15+15+15	17+17+17	15+15+15+15	17+15+15+15	17+17+17+17
32층	15+15+15	15+15+15	17+15+15	15+15+15+15	15+15+15+15	17+17+15+15	17+17+17+15+15
33층	15+15+15	15+15+15	17+17+15	15+15+15+15	15+15+15+15	17+17+17+17	17+17+17+15+15
34층	15+15+15	15+15+15	17+17+17	15+15+15+15	17+15+15+15	17+17+17+15+15	17+15+15+15
35층	15+15+15	15+15+15	15+15+15+15	15+15+15+15	17+17+15+15	17+17+17+15+15	17+15+15+15
36층	15+15+15	17+15+15	15+15+15+15	15+15+15+15	17+17+17+17	17+17+17+15+15	17+17+17+15+15
37층	15+15+15	17+17+15	15+15+15+15	17+15+15+15	17+17+17+17	17+17+17+15+15	17+17+17+17+17
38층	15+15+15	17+17+15	15+15+15+15	17+17+15+15	17+17+17+15+15	17+17+17+15+15	17+17+17+17+17+17
39층	15+15+15	17+17+17	15+15+15+15	17+17+17+17	17+17+17+15+15	17+17+17+15+15	17+17+17+17+17+15
40층	15+15+15	17+17+17	15+15+15+15	17+17+17+17	17+17+17+15+15	17+17+17+15+15	17+17+17+17+17+15

[붙임 7]

공동주택 인승별 승강로 규격

인 승	일반 ¹⁾	MRL ²⁾ (machine room less)	전망용 ³⁾
13	2,150x2,300	2,450x2,000	2,400x1,950
15	2,400x2,300	2,450x2,150	2,400x2,100
17	2,400x2,300	2,750x2,150	2,800x2,100
20	2,400x2,500	2,750x2,350	2,800x2,300
13+13	4,350x2,300	5,000x2,000	
13+15	4,350x2,300	5,000x2,150	
15+15	4,650x2,300	5,000x2,150	
15+17	4,650x2,300	5,300x2,150	
15+20	4,650x2,500	5,300x2,350	
17+17	4,900x2,300	5,500x2,150	
17+20	4,900x2,500	5,500x2,350	
20+20	4,950x2,500	5,500x2,350	
15+15+15	6,550x2,300		
15+15+17	6,750x2,300		
17+17+17	7,350x2,300		
20+20+20	7,500x2,500		

1) 2019년 3월 28일 이후 사업승인 신청분부터

2) 2006년 3월 이후 사업승인신청지구

3) 2006년 3월 이후 사업승인신청지구

[붙임 8]

심사위원 명단

- ☐ 심 사 명 : 0000 A-00블록 공동주택
☐ 심사일시 : 2021. 0. 00(화) 00:00 (예정)
☐ 장 소 : LH 본사 3층 회의실1

연번	심사위원		비 고
	소속	성명	
1			
2			
3			
4			
5			
6			
7			
8			예비1
9			예비2

※ [예비 2인] 기피, 제척 등 결원 발생시 예비 우선순위에 따라 총원

내부위원 결원시에도 외부위원으로 총원

※ 공모안 접수 이후 심사위원에 공모안 사전교부 예정

※ 우리 공사 사정에 의해 장소 및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변경시 별도 통보 예정)

- 서식1. 설계공모 응모신청 및 작품제출 약속서
서식2.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서식3. 청렴 서약서
서식4. 공정거래 이행 약속서
서식5. 기술자 보유현황
서식6.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7. 심사위원 기피 신청서
서식8. 위임장
서식9. 설계도집(표지)
서식10. 설계공모 작품접수서
서식11. 대표자 선임서 (예시)
서식12.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서
서식13.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서식14. 서약서
서식15. 사전접촉 금지 확인서
서식16.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서식17. 기술검토서(표지)
서식18. 설계개요 및 시설면적표
서식19. 면적 산출표
서식20. 부대복리시설 면적표
서식21. 관련법규 검토서
서식22. 설계도서 사전검토
서식23. 동별 주차대수 배분결과 검토표
서식24. 설계 수행계획서
서식25. 목표공사비 산출근거 자료
서식26. 심사실태촬영, 저장 및 인터넷 중계 동의서
서식27.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서식28. 건축구조계획 검토 확인서
서식29. 설계현황

[서식 1]

설계공모 응모신청 및 작품제출 확약서

※ 접수번호		해당여부 체크 ☐	동반성장형 응모기회 (α2) 사용 건축 ☐ , 전기 ☐ , 소방 ☐	
설계 사무소	업 체 명 (공동응모시 공동응모자 전원 기재)	(인)	전 화 번 호 (FAX 번호)	
		(인)		
		(인)		
		(인)		
	대 표 자 (건 축 사)		주민등록번호	(예) 900101-1*****
소 재 지		E-Mail주소		
응모지구 담당 자		사무실 핸드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최하는 남양주왕숙 A-20BL 공동주택 설계공모에 공모요강 및 설계 지침을 준수하여 응모 및 작품제출할 것을 확약하며, 작품 미제출시에는 작품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설계공모의 참여제한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 공동이행, 분담이행 응모의 경우 업체명 란에 참여업체 모두 기재하되 분담이행 응모업체는 작품제출 확약과 무관함. 2021. 00. 00. 신 청 인(대표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 절 ----- 취 ----- 선 -----

응모신청 및 확약서 접수증

※ 접수번호		해당여부 체크 ☐	동반성장형 응모기회 (α2) 사용 건축 ☐ , 전기 ☐ , 소방 ☐		접수인		
대 상 지 구							
업 체 명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소 재 지						주민등록번호	(예) 900101-1*****

접수일 : 2021. 00. 00.

[서식 1-1]

현상공모 응모신청 및 확약서 세부현황

번호	공종	업체현황	담당자	연락처
1	건축	(주)0000종합건축사사무소	홍길동	010-1111-2222
		(주)종합그룹00건축사사무소	김00	010-1111-2222
	전기·통신	(주)000000	전00	010-1111-2222
	기계소방	(주)0000엔지니어링	홍00	010-1111-2222
	전기소방	(주)0000엔지니어링	현00	010-1111-2222
	공간환경	디자인0000	박00	010-1111-2222
	마케팅분석	(주)000000	최00	010-1111-2222

※ 전기·통신, 소방(기계, 전기) 업체가 동일해도 공종 각각에 업체명, 담당자, 연락처 표기

[서식 2]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당사는 0000지구 00BL 공동주택 설계공모 참가업체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에 임할 것이며, 공모 심사위원과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1. 00. 00.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 3]

청 럽 서 약 서

당사는 0000지구 00BL 공동주택 설계공모 참가업체로서 사전접촉, 사전설명 및 비리·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LH 비리·부정행위 등 제재기준」에 따른 공모참여제한, 감점처분 및 위약금 부과와 비리·부정행위시 공모참여 취소,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위약금 부과 처분시 아래의 위약금을 지정된 기일내(제재결정 통보후 14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약정하며, 납부한 위약금이 위반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됨에 동의합니다.

- 위약금 : 설계용역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단, LH가 지급해야 할 신고포상금이 위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포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21. 00. 00.

<동일 사무소 근무시>

건축사사무소

대표 : (인)

대표 : (인)

"이하" 연명으로 서명

<분담이행방식 응모시>

업체명 :

대표 : (인)

대표 : (인)

"이하" 연명으로 서명

<공동응모시>

건축사사무소

대표 : (인)

대표 : (인)

"이하" 연명으로 서명

업체명 :

대표 : (인)

대표 : (인)

"이하" 연명으로 서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 4]

공정거래 이행 약속서

당사는 0000지구 00BL 공동주택 설계공모 응모와 관련하여 복수의 계열사 등을 이용한 연간 당선견수 증대 시도 등 불공정 행위 일체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향후 제출된 내용이 거짓으로 판정되거나, 익명의 신고접수 또는 발주기관 자체조사 등을 통해 '공정거래법 제2조 2호에 의한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응모참여(불공정 행위)로 판정될 시는 LH 현상 설계 2년간 참여제한 등의 제재처분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1.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여부 [☐ 해당, ☐ 미해당]

2. 상세현황

응모 업체명	대표자	공정거래법상의 기업집단 해당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 붙임 : 해당업체 제출자료(상기 1호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주주명부 사본
- 법인 인감증명서 및 법인 등기부등본
- 회사 설립당시의 은행계좌 통장사본

2021. 00. 00.

<분담이행방식 응모시>

건축사사무소 업체명 :
대표자 : _____ (인) 대표자 : _____ (인)

<공동응모시>

건축사사무소 업체명 :
대표자 : _____ (인) 대표자 : _____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 5] (신진건축사, 신규건축사, 여성건축사, 창업건축사 대상 제한공모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입사일	자격내용		비고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 참고

1. 자격내용중의 등록번호는 경력수첩상의 등록번호를 말함.
위와 같이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수행 확인서 1부. (대한건축사협회 발행)

2021. 00. 00.

회사명 :

대표자 : _____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 6]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대표자(건축사)		신 청 접 수 번 호	
설 계 사 무 소 명		전 화 번 호 (FAX번호)	
소 재 지		E-Mail주소	

지 구 명 :
질의사항 :

2021. 00. 00.
질 의 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 7]

심사위원 기피 신청서

당사는 0000지구 00BL 공동주택 설계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선정된 심사위원(또는 전담심사위원) 중 기피 사유에 해당되는 위원이 있는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해당위원 기피를 신청합니다.

위원명	근 무 처	근거 및 사유

※ 기피 사유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붙임 : 기피사유 관련 증빙자료 1식.

2021. 00. 00.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 8]

위임장

본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OOO지구 OOBL 공동주택 설계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사전검토 결과에 대한 확인을 000 에게 위임합니다.

2021. 00. 00.

업체명 : 건축사사무소
(공동참여인 경우)_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 (인)

076

[서식 9]

OO지구 OOBL 공동주택 설계공모 설계도집

2021. 00.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식 10]

설계공모 작품접수서

접수번호 :				
작품 제출자	업 체 명			
	대 표 자 (건 축 사)			
	소 재 지	전 화 번 호 (FAX 번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최하는 0000지구 00BL 공동주택 설계공모에 응모작품을 제출합니다. 첨부 1. 응모신청 및 협약서 접수증 2. 건축사업무신고필증 1통 3. 대표건축사 인장(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4. 대표자 선임서(서식11, 해당자에 한함) 5. 참여외부전문가신고서(서식12, 해당자에 한함) 6. 공동수급협정서(서식13, 해당자에 한함) 7. 서약서(서식14) 2021. 00. 00.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 절 ----- 취 ----- 선 -----

응 모 작 품 접 수 증				
※ 접수번호				접수인
대 상 지 구				
설계사무소명				
대 표 자 (건 축 사)	전 화 번 호 (FAX 번호)			
소 재 지	주민등록번호	(예) 900101-1*****		
접수일 : 2021. 00. 00.				

[서식 11]

대표자 선임서(예시)

<한 설계사무소에 대표건축사가 둘 이상인 경우>

본인은 000 건축사사무소의 공동대표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0000지구 00BL 공동주택 설계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본 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000에게 위임합니다.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응모의 경우>

본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0000지구 00BL 공동주택 설계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000건축사사무소 대표 000에게 위임합니다.

2021. 00. 00.

<동일 사무소 근무시>

건축사사무소
대표 : _____ (인)
대표 : _____ (인)
"이하" 연명으로 서명

<분담이행방식 응모시>

업체명 : _____
대표 : _____ (인)
대표 : _____ (인)
"이하" 연명으로 서명

<공동응모시>

건축사사무소 업체명 : _____
대표 : _____ (인) 대표 : _____ (인)
대표 : _____ (인) 대표 : _____ (인)
"이하" 연명으로 서명 "이하" 연명으로 서명

* 한 건축사사무소에 대표 건축사가 2인 이상 있거나 두 업체이상의 건축사사무소가 합동으로 작품을 제출시 한 사람의 대표자를 선임해야 함.

[서식 12]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서

참여외부전문가

성명 : _____ (인) 주민등록번호 : (예) 900101-1*****
 소속 : _____
 용역참여기간 : 20... ~ 20...

상기인이 OOOO지구 OOBL 공동주택 설계공모에 외부전문가로 참여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21. 00. 00.

건축사사무소

대표 : _____ (인)

대표 : _____ (인)

“이하” 연명으로 서명

<공동응모사>

건축사사무소

대표 : _____ (인)

대표 : _____ (인)

“이하” 연명으로 서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 13]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〇〇〇 :%

2. 〇〇〇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부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부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부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로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1. 00. 00.

〇〇〇 (인)

〇〇〇 (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2. ○○○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 나) ○○○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1. 00. 00.

〇〇〇 (인)

〇〇〇 (인)

[서식 14]

서 약 서

본인(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포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아니함을 서약합니다.

만일 본 서약과 다른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1. 00. 00.

<동일 사무소 근무시>

건축사사무소

대표 : _____ (인)

대표 : _____ (인)

“이하” 연명으로 서명

<분담이행방식 응모시>

업체명 :

대표 : _____ (인)

대표 : _____ (인)

“이하” 연명으로 서명

<공동응모시>

건축사사무소

대표 : _____ (인)

대표 : _____ (인)

“이하” 연명으로 서명

업체명 :

대표 : _____ (인)

대표 : _____ (인)

“이하” 연명으로 서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 15]

사전접촉 금지 확인서

당사는 『00지구 00BL 공공주택 설계용역』공모 참가업체로서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에 임할 것이며,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에 따라 공모 심사위원과 일체의 개별 접촉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추후 심사 완료시까지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위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1. 00. 00.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 16-1]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전기설계)

☐ 공 모 명 :

☐ 참여설계사 :

평 가 항 목		세 부 사 항		자기평가 평점	심사부서 평가	비 고
분 야 별	배 점	항 목	배 점			
1. 참여기술인력	50	가. 자격 또는 등급	책임기술자	5		절대평가
			참여기술자	5		
			책임기술자	10		
		나. 경력	참여기술자	5		"
			책임기술자	15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5	가. 최근 5년간 실적금액	참여기술자	10		"
			나. 최근 5년간 실적건수	5		"
3. 신 용 도	10	가.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업무정지		7		"
			나. 신용평가등급	3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5	가. 개발실적		4		"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8		"
		다. 교육실적		3		"
5. 업무충성도	10	가. 책임기술자		6		"
		나. 참여기술자		4		"
6. 감 점		가. 부실벌점				
		나. PQ통과후 공모불참 - 1회불참: 0.5점 감점 - 2회이상: 1점 감점	최대 -5점			"

※ 자기평가평점란은 참가업체에서, 심사부서평가란은 LH에서 작성(이하 동일)

상기 종합평가표는 LH의 「설계공모 심사 운영지침」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된 것으로, 특히 신청자 자기평가평점이 위조·변조 등 부정한 서류에 의해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공모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년 일

<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대표 : (인)

대표 : (인)

"이하" 연명으로 서명

<공동응모시>

건축사사무소

대표 : (인)

대표 : (인)

"이하" 연명으로 서명

<분담이행방식 응모시>

업체명 :

대표 : (인)

대표 : (인)

"이하" 연명으로 서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 16-2]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소방설계)

□ 공 모 명 :

□ 참여설계사 :

항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실적	배점	평점	비고
1. 참여 소방 기술자	책임기술자 (백두산)	등 급		5	-	
		설계분야 경력		10		
		유사용역 실적		15		
		소 계		30		
	참여 기술자 (한라산)	등 급		5	-	
		설계분야 경력		5		
		유사용역실적		10		
		소 계		20		
2. 유사용역 참여실적	실적금액		억원	10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실적건수		건	5		
	합 계		-	15		
3. 신용도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감리업체	월	4		지분율을 공급하지 않음
		참여감리원	월	3		
		소 계		7		
	재정상태 건실도	자본비율		1		업체별 평가 후 지분율에 따라 합산
		유동비율		2		
		소 계		3		
4.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등	기술개발실적		건 / 점	4		
	투자실적	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	%	8		
	교육실적	참여감리원의 최근 3년간 교육훈련		3		
	합 계			15		
5. 업무 중첩도	책임기술자		개	6		
	참여기술자		개	4		
	합 계			10		
6. 가감점	감 점	부실벌점(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 부실벌점)				지분율을 공급하지 않음
	가.감점 합계					

상기 자기평가서는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고, 제출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는 교체 불가능함을 확인하며,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년 일

<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대표 : _____ (인)

대표 : _____ (인)

“이하” 연명으로 서명

<공동응모시>

건축사사무소

대표 : _____ (인)

대표 : _____ (인)

“이하” 연명으로 서명

<분담이행방식 응모시>

업체명 :

대표 : _____ (인)

대표 : _____ (인)

“이하” 연명으로 서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 17]

OO지구 OOBL 공동주택 설계공모 기술 검토서

2021. 00.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식 18]

설계개요 및 시설면적표

구 분		단위	적용내용	비 고
토 이 계	대지면적	m ²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지상연면적)	%(m ²)		
	도로율(주차장포함)	"		
건 내 설 역	녹지율(조경면적)	"		전용면적기준
	20m ² 형	세대		
	26m ² 형	"		
	36m ² 형	"		
부 대 시 설	복리 및 후생 시설	관 리 사 무 소	m ²	
		경로당	"	
		주민공동시설	"	
		보육시설	"	
		문고	"	
		...	"	
	근린생활 시설	소계	"	
		근린생활시설	m ²	
	주차 시설	지상(옥외)주차장	대	옥내주차장 대당 면적 : m ² /대 () : 지하주차장 연면적
		옥내주차장	대(m ²)	
		소계		
	체육 및 놀이 시설	어린이놀이터	m ²	관련규정에 맞는 적정시설 및 규모 결정
		유아놀이터	m ²	
		운동장	개소	
		배드민턴장	"	
		·	"	
		·	"	
		기타	개소	
	공동 저수 시설	소계		
		지하저수조	톤	
		...		
	기타 시설	소계		관련조례에 적합하게 설치
		쓰레기수거함	개소	
		재활용품보관소	"	
		통합경비실	"	
		...	"	

※ 소수점 기입방법 : 소수점 세째 자리에서 절사하여 둘째자리까지 표기

[서식 19]

면적 산출표

□ 전체 면적표

(단위 : m²)

구분	동별	층수	세대수	지하층	1 층	기준층	연면적	지상층 연면적	지하층 연면적	건축 면적	비 고
아 파 트	00동										
	00동										
	00동										
	00동										
	00동										
	00동										
부 대 복 리 시 설	소계										
	지하주차장1										
	지하주차장2										
	주민복지관										
	경 비 실										
	근린생활시설										
	소 계										
합 계											

※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은 과장되지 않도록 산출해야 하며, 평가자가 정확성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첨부

※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작성

□ 아파트 유형별 면적표

(단위 : m²)

유 형	동번호	전용 면적	공 용 면 적			연면적			공용 면적 비율	비 고
			코 아	복 도	소 계	지상층 연면적	지하층 연면적	소 계		
26-120-15F										
계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둘째자리까지 표현

□ 아파트 층별 면적표

(단위 : m²)

동번호	층수	실 사용면적					발코니 면적	계	건축면적 (시공면적)
		전용 면적	주거공용면적						
			코 아	복 도	소 계				
00동	1층								
	2층								
	3~15층								
	15~20층								
계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둘째자리까지 표현

※ 1층, 기준층 및 층별 면적이 달라지는 모든 층에 대하여 작성

□ 아파트 층별 면적표

(단위 : m²)

구 분	00m ² 0형	00m ² 0형	00m ² 0형	00m ² 0형	00m ² 0형	00m ² 0형	비 고
전 용 면 적 - 거 실 - 침 실1 - 침 실2 - 침 실3 - 부 욕, 식 당 - 욕 실 - 현 관 - 창 고 - 기 타							- 소계 및 각 실별 면적 산정시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을 원칙으로 하되, - 각 실 면적의 합은 소계와 일 치 시켜야 한다.
소 계 (A)							
주 거 공 용 면 적 - 벽체공용면적 - 복 도 - 계 단 - 기 타							- 벽체공용면적 포함 모든 주거 공용면적은 단위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
소 계 (B)							
기 타 공 용 면 적							- 아파트 지하층 및 단지내 공 유시설(관리소, 경로당, 기계실, 경비실 등) 면적 - 단위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
서 비 스 면 적 - 발 코 니 1 - 발 코 니 2 - 발 코 니...							
소 계 (C)							
주 거 공 용 면 적 비 율 (B/A)							- 전용면적에 대한 비율
서 비 스 면 적 비 율 (C/A)							- 전용면적에 대한 비율

※ 단위세대면적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하여 둘째자리까지 표기

※ 벽체공용면적 포함 모든 공용면적은 단위세대 타입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

[서식 20]

부대복리시설 면적표

구 분		실명	산식	면적
주민지원시설	전용	각 실별구분		
		. . .		
		소 계		
	공용	. . .		
		소 계		
경 로 당	전용	각 실별구분		
		. . .		
		소 계		
	공용	. . .		
		소 계		
상 가	전용	각 실별구분		
		. . .		
		소계		
	공용	. . .		
		소 계		
. . .	전용	각 실별구분		
		. . .		
		소 계		
	공용	. . .		
		소 계		

※ 각 시설별로 구분(주민지원시설, 경로당 등)하여 산출

[서식 21]

관련법규 검토서

법규		조합	대상	법적기준	설계적용	비 고
주 건 기 등 관 규	택 설 준 에 한 정	제25조 진입도로	500세대 이상	도로폭 12m이상	00m	1.5m이상 보도 포함
		제26조 단지내도로	500세대 이상	도로폭 12m이상	00m	
		제27조 주차장				
		제28조 관리사무소				
		제35조 비상급수				
		제46조 어린이놀이터				
		제50조 근린생활시설등				
		제53조 주민운동시설				
		제55조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건 축 법 · 건 축 조 례						

[서식 22]

설계도서 사전검토

※ "표장 지구별 설계지침"에 별도로 제공되는 내용에 따라 작성

구 분	기 준	계 획	위반여부	비 고 (의 건)	
1. 세대수	○ A2 : 748호 ○ A3 : 543호	○ A2 : 호 ○ A3 : 호		· 감점항목	
2. 평형배분	○ A2 - 전용 59㎡ : 542호 - 전용 74㎡ : 144호 - 전용 84㎡ : 62호 ○ A3 - 전용 55㎡ : 543호	전용 - 전용 59㎡ : 호 전용 - 전용 74㎡ : 호 면적 - 전용 84㎡ : 호 - 전용 55㎡ : 호		· 감점항목	
3. 용적률	○ A2 : 180%이하 ○ A3 : 170%이하	○ A2 : % ○ A3 : %		· 감점항목	
설계 지침	4. 지구단위 계획	○ 건축한계선 6m 준수 ○ ○ %		· 감점항목	
	5. 주차장계획	○ 주차대수 : 1.2대/호 이상 ○ 지하주차비율 : 100%(상가제외) ○ 장애인 : 30%이상 ○ 경 형 : 10%이내 ○ 확장형 : 30%이상	○ 주차대수 : 대(대/호) ○ 지하주차비율 : % ○ 장애인 : % ○ 경 형 : % ○ 확장형 : %	· 감점항목	
	6. 건축계획 부문	○ 부위별 표준치수 준수 등		· 감점항목	
	1. 공통사항	○ 모든 제출물 제출	○ 제출물 누락 여부		
	도서 작성	2. 설계도집	○ 도면매수 : 30매이내 (표지, 목차제외, 간지 불허) · 기본구상도 : 1매 · 단지계획도 : 1매 · 특화계획도 : 6매 · 단위세대 평면도 : 1~2매 · 주거동평면도 : 1~2매 · 주거동 입면도 : 1~2매 · 주차장계획도 : 1~2매 · 부대복리시설계획도 : 1~2매 · 모형사진 : 2매 · 인동거리검토도 : 1매 ○ 설계지정축척 위반(도면) · 단지계획도 축척 : 600분의 1 · 인동거리검토도 축척 : 600분의 1 · 단위세대 평면도 축척 : 150분의 1 · 주동평면 및 입면계획도 축척 : 400분의 1 · 부대복리시설계획도 축척 : 300분의 1 · 주차장계획도 축척 : 800분의 1이상 ○ 설계도집 표현방법 준수 ○ 모든 단위세대 평면도 작성	○ 도면매수 : 매 (표지, 목차제외, 간지불허) · 기본구상도 : 매 · 단지계획도 : 매 · 특화계획도 : 매 · 단위세대 평면도 : 매 · 주거동평면도 : 매 · 주거동 입면도 : 매 · 주차장계획도 : 매 · 부대복리시설계획도 : 매 · 모형사진 : 매 · 인동거리검토도 : 매 ○ 설계지정축척 위반(도면) · 단지계획도 축척 : 분의 1 · 인동거리검토도 축척 : 분의 1 · 단위세대 평면도 축척 : 분의 1 · 주동평면 및 입면계획도 축척 : 분의 1 · 부대복리시설계획도 축척 : 분의 1 · 주차장계획도 축척 : 분의 1 ○ 위반내용 ○ 모든 단위세대 평면도 작성 여부	· 감점항목
3. 축소모형		○ 축소모형 작성기준 준수	○ 위반내용		· 감점항목

■ 감점 사항

구 분	위반건수	감점	비 고
법 규 위 반			
도 서 작 성 위 반			
설 계 지 침 위 반			
계			

[서식 23]

동별 주차대수 배분결과 검토표

동	세대수	형별 세대수		주차대수			전체주차 (대수/호)	지하(건물식)주차 (대수/호)
		유형(㎡)	세대수	지상	지하 (건물식)	계		
계	000		00	000	000	000	0.00	0.00
000동	00		00	00	00	000	0.00	0.00
			00					
000동	00		00	00	00	000	0.00	0.00
			00					
000동	00		00	00	00	000	0.00	0.00
			00					
000동	00		00	00	00	000	0.00	0.00
			00					
000동	00		00	00	00	000	0.00	0.00
			00					
000동	00		00	00	00	000	0.00	0.00
			00					
000동	00		00	00	00	000	0.00	0.00
			00					
000동	00		00	00	00	000	0.00	0.00
			00					
000동	00		00	00	00	000	0.00	0.00
			00					
000동	00		00	00	00	000	0.00	0.00
			00					
...								

[서식 24] (사업승인, 실시설계 동시추진 지구)

설계 수행계획서

평가항목	① 사업승인 및 착공 동시추진에 따른 설계 공정관리 계획 (단계별 설계 추진일정 및 인력운영계획 포함) ② 시공 과정의 설계자 현장지원방안 ③ 설계오류 최소화를 위한 자체설계 검증 운영방안 ④ 전문협력업체와의 협력계획
※ 작성 방법 - 4개 항목별로 작성(총 2페이지로 작성) - 공모 당선 이후 실행 가능한 설계 수행계획서 제출 - 텍스트와 도표로 구성하여 작성	

[서식 25] (공공분양지구)

목표공사비 산출근거 자료

□ 지구명 : 00지구 00BL

(단위 : 천원)

설계타입명	연면적	계	건축	기계	전기	통신	토목	조경
(1동)55A-100+25F	300.0	1,619	1,057	125	132	63		
(2동)55A-100+25F	500.0	534,100	317,100	37,500	39,600	18,900		
(3동)55A-97+25F	7,934.36	1,820	883	385	230	80		
(4동)55A-98+25F	4,082.52	13,508,389	7,006,040	3,054,729	1,824,903	634,749		
(5동)55A-92+22F	11,398.45	1,812	891	377	221	81		
(6동)55A-92+22F	5,864.92	19,314,878	10,156,019	4,297,216	2,519,057	923,274		
(7동)55A-92+22F	60.0	4,784	4,082	192	268	0		
(8동)55A-92+22F	0.0	272,520	244,920	11,520	16,080	0		
(9동)55A-92+22F	110.0	1,555	972	189	113	39		
(00동)55A-92+22F	0.0	144,430	106,920	20,790	12,430	4,290	대지면적당 공사비 (㎡:000)	대지면적당 공사비 (㎡:000)
(11동)55A-92+22F	180.0	1,571	972	205	113	39		
(12동)55A-92+22F	0.0	239,220	174,960	36,900	20,340	7,020		
(13동)55A-42+44-21F+22F	120.0	1,529	972	163	113	39		
상가	0.0	154,440	116,640	19,560	13,560	4,680		
어린이집	780.0	1,555	972	189	113	39		
전기실/발전기/열교환/ 펌프실	0.0	1,024,140	758,160	147,420	88,140	30,420		
경비실	500.0	1,555	972	189	113	39		
작은도서관	0.0	656,500	486,000	94,500	56,500	19,500		
주민공동시설	595.0	1,645	1,283	56	56	8		
지하주차장	0.0	834,785	763,385	33,320	33,320	4,760		
합 계		36,702,847	20,143,200	7,755,524	4,625,402	1,648,020	1,328,095	1,202,605

- (포함) 부가세, (제외) 기타공사비
- 조경, 토목은 대지면적당 공사비 표기
- 양식은 지구별 변경표현 가능

[서식 26]

심사실황 촬영, 저장 및 인터넷 중계 동의서

□ 공 모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상기공모 심사평가에 관하여 공정·투명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실황을 촬영, 저장 및 일반시민 대상으로 인터넷 중계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아래 사항에 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이용 항목] 성명, 성별, 얼굴, 소속 등 [수집·이용 목적] 상기 용역 심사평가 관련 활용 [이용 및 보유 기간] 1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3자 제공 항목] 성명, 성별, 얼굴,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전자메일 등 [제3자 제공 목적] 심사실황 중계 [제공받는 자] 일반 시민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제공목적 달성시 즉시 폐기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초상권 사용에 대한 동의
본인은 촬영자(한국주택토지공사)가 촬영한 방송영상물 일체(동영상 등 영상물, 이를 기획 및 편집하여 2차 생성되는 영상물 등)에 대하여 촬영자에게 본인의 초상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촬영자는 공정·투명한 심사를 위한 심사과정 공개 목적으로만 심사실황을 촬영, 저장 및 인터넷 중계하며, 본인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송영상물 일체에 대한 편집 및 보정을 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기타 제반권리의 공개·사용에 대한 동의
본인은 저작자 및 저작권 이용허락자로서 한국토지공사에게 인터넷 중계를 통해 공개될 수 있는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이용 허락함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인터넷 중계에 수반되어 공개될 수 있는 그 밖의 일체의 사항(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등의 산업재산권, 공표되지 않은 영업비밀 등)에 관한 권리의 침해를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유의사항]

- 귀하는 상기 사항에 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공모 참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영업비밀 등 반드시 비공개가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사전 심사를 요청하여 하며, 사전 심사를 통해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사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집한 범위를 넘어 본인의 과실로 공개한 사항에 대한 권리의 침해 및 이에 따른 배상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각 입찰 참여업체 대표들은 심사평가에 참여하는 모든 소속 직원들 및 인터넷 중계에 수반되어 공개될 수 있는 그 밖의 일체의 사항(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등의 산업재산권, 공표되지 않은 영업비밀 등)에 대한 법적 권리자로부터 본 동의서를 작성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위 동의서 누락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입찰 참여업체에게 있고, 이와 관련해 입찰 참여업체는 본인 및 제3자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면책합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 . .

참여업체 대표 : (인)

심사참여 직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서식 27]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심사위원 사후평가 설문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심사 참여자(이하 「참여자」로 약칭)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 22조 와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기술심사평가위원 사후평가]의 조사 참여를 위해 공사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일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공사는 참여자 정확한 조사 진행을 위해 일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참여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 정보(인종,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이나 범죄기록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 정보의 항목

1) 소속, 직급/직책, 성명, 전화번호(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나. 수집방법

1) 서면

공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참여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하기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에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가. 수집목적

- 1) 설문조사 및 설문조사 후 검증용
- 2) 통계목적 자료처리
- 3) 2차조사

참여자는 위와 같은 일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일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 공유 및 제공

공사는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1. 일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공사가 수집한 참여자의 고유식별정보를 아래의 내용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가. 참여자가 사전에 공개하는데 동의한 경우

나. 법령과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다.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참여자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공유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에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공사는 본 조사의 수행을 위해 타 회사에 개인정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가. 위탁 기관 : ㈜글로벌리서치

참여자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에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동의 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수집 개인정보		
☐ 공 모 명 :		
소속	직급/직책	성명
전화번호(사무실)	전화번호(핸드폰)	이메일
* 공모 참여업체 심사참여자중 심사위원 사후평가 설문자로 가장 적합하다고 참여업체가 판단하는자. (심사과정, 채점표, 평가사유서 등 심사전과정을 확인한자)		

동 의 일 자 : 년 월 일

동의자 이름 :

[서식 28]

건축구조계획 검토 확인서

(라멘구조, 무량판구조 적용 시 작성)

대상 : 남양주왕숙 A-20BL 현상설계공모

설계용역지침서에 의거 위 지구 구조계획에 참여하여 건축계획과 구조계획의 적합성 및 구조안전성을 검토하여 제출도서에 반영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첨부 : 해석결과 요약서 1부 끝.

20 . .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해석결과요약서 작성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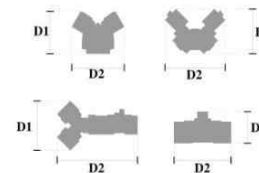
- 대표되는 동은 단지내에서 구조적으로 가장불리한 동을 선정한다(대형평형, 고층 및 비정형성이 높은 동)
- 주요하중적용기준
 - 고정하중, 활하중, 지진하중, 풍하중 등
- 재료강도 및 부재두께 일람표
- 횡하중에 대한 사용성 평가결과
 - 층간변위, 최대변위 검토내용 포함
- 지진력저항시스템 산정근거
- 업체명 기입 금지

[서식 29]

설계현황

구분	항 목		계획기준	업체명(건축대표)
호수	건설 호수	55㎡	55㎡ 100% 적용 (1,167호 이상)	00 호
용적률			160%이하	00 %
평면 TYPE 갯수			평형별 4개 이하	4
주동층수			20층 이하	00 ~ 00층
주동 형태	계		-	5
	판상형		-	2
	탑상형		-	3
피로티 개수			세대기준	1
지붕형태			평지붕, 경사지붕 등	평지붕
부대 복리 시설	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0000.0㎡
	주민공동시설면적		총량제 준수 (세대수×2.5이상)	0000.0㎡
주차 대수	총 주차대수	(APT)	1.2대/호 이상	000대
		상가	조례기준	00대
	지하주차 비율		100% 적용(상가제외)	100%
	주차구획		일반형(2.5×5.0m), 확장형(2.6×5.2m) 적용	적용
	임산부(2.7×5.2m)용 주차구획		동당 2 ~4대	적용

<참 고>



(탑상형) 주거동을 수평 투영하여 평면상 단변의 길이(D1)와 장변의 길이(D2)가 1:2.5 이하